

〈譯註〉

## 『舊唐書』 권13, 德宗本紀下\*

채 지 혜 \*\*

[德宗] 貞元 4년(788) 봄 정월 경술일 초하루 황제가 丹鳳樓(즉 大明宮의 正門)로 나가 제서를 내려 말하길

짐은 부덕한 몸으로 王公의 위에 올라 공경히 天地의 질서에 따르고 삼가 祖宗의 가르침을 받들어 멀리 지극한 다스림을 생각하고 大和를 이루길 희망하였다. 하지만 정성을 다하였으나 만물을 감응시키지 못하고 教化를 펼쳤으나 먼 곳에 있는 백성을 회유하지 못하였으니, 위엄과 教化[聲教]는 여전히 막혀있고 전쟁과 부세[征賦]는 여전히 빈번하였다. 근자에 백성을 평안히 하는 데에 힘쓰고자 나를 굽히는 것도 꺼리지 않고 西蕃과 우호를 맺으려 맹약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오랑캐의 마음은 만족할 줄 몰라 의리를 저버리고 신뢰를 배반하여 士庶를 겁박하고 封疆을 침범하였다. 백성들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모두 짐의 잘못이다. 지난날 경사에서 흉악한 자들이 일을 꾸몄으나 上帝의 보살핌으로 모두 伏誅하였는데, 형벌로 살육을 저지한 것은 진실로 부득이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봄철의 화창한 기운이 펼쳐져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니, 군신·백성들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를 펼쳐 마땅히 너그러운

\* 『구당서』 권13, 덕종본기하, 中華書局標點本, 363~401쪽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 중 정월 4년 정월부터 정월 10년 12월까지의 조재우, 정월 11년 정월부터 정월 15년 6월까지의 이진선, 정월 15년 7월 이후는 정병준께서 교정해 주었다.

\*\* 京都大學 박사과정 수료

은택을 내려 죄수들을 풀어주는 은택을 펼치고자 한다. 천하에 大赦를 내려 大辟 已下の 罪를 모두 赦除한다.<sup>1)</sup>

라고 하였다. 이날 새벽녘 含元殿(즉 대명궁의 外朝) 앞의 계단 기단과 난간 30여 칸이 파손되어 衛士 10여 인이 압사하였다. 京師에 지진이 일어났고 辛海일(2일) 다시 지진이 일어났으며 임자일(3일) 다시 지진이 일어났다.<sup>2)</sup> 임술일(13일) 左龍武大將軍 王栖曜를 麟州刺史·廊坊丹延節度使로 삼았다. 정묘일(18일) 경사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진일(19일) 다시 지진이 일어나고, 경오일(21일) 다시 지진이 일어났다. [임신일(23일)] 宣武軍行營節度使 劉昌을 涇州刺史·四鎮北庭行軍涇原等州節度使로 삼았다. 계유일(24일) 경사에 지진이 일어났다. 갑술일(25일) 華州潼關節度使 李元諒을 兼隴右節度使·臨洮軍使로 삼았다.<sup>3)</sup> 을해일(26일) 지진이 일어났는데, 金·房州가 더욱 심하였다. 강이 범람하고 산이 무너졌으며, 가옥이 많이 무너져 주민들이 노숙하였다. [汴州] 陳留[縣]에서 빗방울이 나무에 [얼어붙은 것이] 엄지손가락만 하였고 길이는 한 치[寸] 남짓이었

1) 『全唐文』 권55, 德宗皇帝6, 「春令大赦文」, “…… 可大赦天下. 大辟罪已下, 繫囚見徒, 常赦所不原者, 咸赦除之. 官吏犯贓不在免限. 流人配隸放還, 左降官量移近處, 已經量移者更與量移. 百姓逋欠, 一切放免. ……”(中華書局, 587~588쪽); 『新唐書』 권7, 덕종본기, 정원 4년(788) 정월 조, “庚戌朔, 京師地震. 大赦, 刺史子一子官, 增戶墾田者加階, 縣令減選, 九品以上官言事”(中華書局, 195쪽); 『資治通鑑』 권233, 정원 4년 정월 조, “庚戌朔, 赦天下. 詔兩稅等第, 自今三年一定. [考異: ……]”(中華書局, 7509쪽).

2)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4년 이해 조, “是歲, 京師地震二十”(196쪽). 『구당서』 권37, 五行志, 1348쪽에 의하면, 1월 9차례, 2월 4차례, 3월 4차례, 5월 1차례, 8월 1차례의 지진이 있었다고 한다.

3)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 정월 조, “壬申, 以宣武行營節度使劉昌爲涇原節度使. 甲戌, 以鎮國節度使李元諒爲隴右節度使. [胡三省注: 涇原節度使治涇州. 隴右節度使治秦州. 劉昌以汴兵防秋, 爲行營節度使. 李元諒本鎮華州, 領鎮國軍節度使]. 昌·元諒, 皆帥卒力田, 數年, 軍食充羨, 涇·隴稍安”(7509~7510쪽).

다. 구멍이 뚫려 있어 속이 비었고 아래로 늘어져 땅에 심은 것 [갈았는 데], 무릇 10리에 걸쳤다.<sup>4)</sup>

[2월] 신사일(2일) 李泌이 京官의 월봉[俸]이 박하다고 여겨 中外에 지급하는 除陌錢<sup>5)</sup> 및 關官의 월봉 외 一分의 職田, 額內官의 월봉 및 刺史 執刀·司馬軍事 등의 錢을 취해 戶部別庫에 저장해 두어 京官의 月俸으로 지급하게 하고 御史中丞 竇參에게 이를 傳掌하도록 청하였다. 해마다 錢 30萬 貫을 얻었는데, 이를 ‘戶部別處錢’이라고 하였으며 朝臣에게 매년 지급한 것은 50만에 불과하고 항상 200여 만을 國用に 사용하였다.<sup>6)</sup> 임오일(3일) 지진이 일어났고 갑신일(5일) 다시 지진이 일어났다. 을유일(6일) 다시 지진이 일어났고 병신일(17일) 다시 지진이 일어났다. 갑진일(25일) 太僕[寺]의 郊牛가 다리 여섯인 송아지를 낳았고, 또 [경사 민가의] 돼지가 두 머리에 네발 달린 [새끼를] 낳았다.<sup>7)</sup> 延喜門 북쪽으로 複

4) 『신당서』 권7, 狄宗本紀, 정원 4년 정월 조, “雨木冰于陳留”(196쪽). 유사한 내용이 (唐) 段成式, 『酉陽雜俎』 권10, 物異, 雨木 조에는 “雨木, 貞元四年, 雨木於陳留, 大如指, 長寸許, 每木有孔通中, 所下其立如植, 徧十餘里”(中華書局, 97쪽)라고 한다.

5) 『자치통감』 권228, 건중 4년 6월 조, “所謂除陌錢者, 公私給與及賣買, 每緡官留五十錢, 給他物及相貿易者, 約錢為率”(7346쪽).

6)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 정월 조, “李泌奏京官俸太薄, 請自三師以下悉倍其俸, [호삼성 주: 唐以太師·太傅·太保爲三師, 倍俸, 倍大曆十二年所增之數也], [考異: 『實錄』, ‘辛巳, 詔以中外給用除陌錢給文武官俸料, 自是京官益重, 頗優裕焉. 初除陌錢隸度支, 至是令戶部別庫貯之, 給俸之餘, 以備他用.’ 按興元元年正月敕, 其所加墊陌錢·稅間架之類, 悉宜停罷. 今猶有除陌錢者, 蓋當時止罷所加之數, 或私買賣者官不收墊陌錢, 官給錢猶有除陌在故也], 從之”(7509쪽). ‘戶部錢’에 관한 연구로는 李錦繡, 『戶部受支』(第3章), 『唐代財政史稿』 第5冊(唐後期的財政收支),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217~261쪽; 何汝泉, 『唐財政三司使研究』, 中華書局, 2013, 293~347쪽 등 참조.

7) 『구당서』 권37, 五行志, “貞元四年二月, 太僕寺郊牛生犢, 六足, 太僕卿周皓白宰相李泌, 請上聞, 泌笑而不答. 又京師人家豕生子, 兩首四足, 有司以白御史中丞竇參, 請上聞, 參寢而不奏”(1370쪽).

도를 지어 永春門에 연결시켰다. 涇原의 劉昌이 다시 連雲堡를 쌓았다.

[3월] 무진(계축?)일(5일) 사슴이 경사의 [西]市門으로 들어왔다.<sup>8)</sup> 갑인일(6일) 지진이 일어났다. 麟德殿에서 군신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九部樂<sup>9)</sup>을 연주하였으며 궁내에서 춤추는 말을 끌고 나왔다. 황제가 시 1장을 짓자 군신들이 시를 지어 창화하였다. 기미일(11일) 지진이 일어났다. 정묘일(19일) 有司가 관원의 감축에 대해 조목으로 나누어 상주하였는데 [條奏], 다만 左右常侍·太子賓客은 이전처럼 4員을 두기를 청하니 이를 따랐다.<sup>10)</sup> 경오일(22일) 지진이 일어났다. 조서를 내려 경원의 유창에게 平涼會盟 [지역에서] 수습한 피살된 장수와 병사들의 해골을 淺水原에 매장하여 무덤[冢] 두 기를 만들고 돌무더기[石堆]를 세워 표지로 삼도록 하였고 ‘懷忠冢’이라 명명[題]하였다.<sup>11)</sup> 신미일(23일) 지진이 일어났다. 중서성의 오동나무에 까치가 출현하여 진흙으로 새집을 지었다.<sup>12)</sup>

[4월] 계사일(16일) 太子左庶子 暢悅을 桂管觀察使로 삼았다. [을미일(18일)] 左右射生을 左右神威軍으로 개편하였다.<sup>13)</sup> [기해일(22일)] 福建에서 병란이 일어나 觀察使 吳詵을 축출하였다.<sup>14)</sup> 정미일(30일) 隴右의

8) 『구당서』 권37, 五行志, “[貞元四年]三月癸丑, 鹿入京師西市門, 厭殺之”(1370쪽).

9) 배운경, 『隋唐時代 ‘高麗伎’ 考察』, 『중국고중세사연구』 31, 2014, 267~279쪽 등 참조.

10) 『구당서』 권43, 職官志2, 門下省, “左散騎常侍二人. [原注: …… 貞元四年正月勅, 依舊四員也](1844쪽); 『唐會要』 권67, 東宮官, 太子賓客 條, “貞元四年正月一日勅, ‘宜留元額四員, 餘並勒停’”(上海古籍出版社, 1379쪽).

11) 『冊府元龜』 권135, 帝王部135, 愍征役, 鳳凰出版社, 1496쪽.

12) 『신당서』 권24, 五行志1, “貞元四年三月, 中書省梧桐樹有鵲以泥爲巢. 鵲巢知歲次, 於羽蟲爲有知, 今以泥露巢, 遇風雨壞矣”(890쪽).

13)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 4월 조, “乙未, 更命殿前左·右射生曰神威軍, [考異: 『實錄』作‘神武軍’, 今從新志]. 與左右羽林·龍武·神武·神策號曰十軍. 神策尤盛, 多戍京西, 散屯畿甸”(7513쪽). 曾我部靜雄, 『唐의 防秋兵과 防冬兵』, 『한국고대사탐구』 25, 2017(원래는 1979·1980), 416쪽의 각주 10, 435쪽 등 참조.

14)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4년 4월 조, “己亥, 福建軍亂, 逐其觀察使吳詵, 大

이원량이 良原城을 축성하였다.

[5월] 정사일(10일) 右龍武統軍 張伯儀가 졸하였다. 신유일(14일) 吉州刺史 張庭을 安南都護·本管經略使로 삼았다. 鄆州를 大都督府로 승격시켰다. 임술일(15일) 諫議大夫 8員을 증치하여 중서성의 4員을 나누어 右[諫議大夫]로 삼고 문하성의 4員을 나누어 左[諫議大夫]로 삼았다.<sup>15)</sup> 檢校左庶子 蕭復이 饒州에서 졸하였다. 병인일(19일) 지진이 일어났고 정묘일(20일) 다시 지진이 일어났다. 달이 歲星을 침범하였다. 신미일(24일) 태자빈객 吳湊가 복건관찰사에 임명되었다.<sup>16)</sup> 을해일(28일) 熒惑·歲·鎮 3星이 營室에 모인 것이 무릇 20일간 이어졌다. 이달 토변이 涇·邠·寧·慶·鄆州 등을 노략질하고 彭原縣을 불살랐는데, 변경의 장수들은 성문을 걸어 닫은 채 스스로를 지켰다. 賊이 사람과 가축 3만 가량을 몰아 무릇 20일 만에 퇴각하였다. 토변은 [항상] 가을과 겨울에 침입하였지만 이번에는 한여름에 왔는데, [이는] 중국인[華人] 가운데 토변[蕃]에 함몰된 자가 그들을 안내한 것이었다.<sup>17)</sup>

6월 정축[삭] 鄂岳觀察使 李棟이 졸하였다. 을유일(9일) 尚書左丞 杜祐를 陝州長史·陝虢觀察使로 삼았다. 夏縣의 處士로 앞서 著作郎에 제수된 陽城을 징소하여 간의대부에 임명하였다. 양성이 평복[褐衣] 차림으로 대궐에 이르자 황제가 예복[章服]을 내린 뒤 불러 [보았다].<sup>18)</sup> 을

---

將郝誠溢自稱留後”(196쪽);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 4월 조, “福建觀察使吳詵, 輕其軍士脆弱, 苦役之. 軍士作亂, 殺詵腹心十餘人, 逼詵牒大將郝誠溢掌留務. 誠溢上表請罪, 上遣中使就赦以安之”(7513쪽).

15) 『구당서』 권43, 職官志2, 門下省, “諫議大夫四員. [原注: …… 至貞元四年五月十五日敕, 諫議分爲左右, 加置八員, 四員隸門下爲左”(1844쪽).

16)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 5월 조, “以太子賓客吳湊爲福建觀察使, 貶吳詵爲涇州刺史”(7513쪽).

17)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 5월 조, “吐蕃三萬餘騎寇涇·邠·寧·慶·鄆等州. 先是, 吐蕃常以秋冬入寇, 及春多病疫而退. 至是, 得唐人, 質其妻子, 遣其將將之, 盛夏入寇. 諸州皆城守, 無敢與戰者, 吐蕃俘掠人畜萬計而去”(7513쪽).

(기?)축일(13일) 桂管都防禦觀察使 창열이 졸하였다. 을미일(19일) 간의대부 何士幹을 鄂岳沔蘄黃等州都團練觀察使로 삼았다. 을(기?)해일(23일) 皇子·皇弟 邕王 [李]諫 등 7인을 왕에 봉하고 卿·監·祭酒 등의 관직을 겸직시켰다.<sup>19)</sup> 계묘일(27일) 熒惑[星]이 退行하여 羽林[星]으로 진입하였다.

가을 7월 경술일(5일) 左金吾將軍 張獻甫를 邠寧節度使로 삼고, 陳許防禦兵馬使 韓全義를 檢校工部尚書·充長武城及諸軍行營節度使로 삼았다. 계축일(8일) 빈녕군에서는 韓遊瓌가 교체됨[受代]에 따라 장헌보의 엄정함을 꺼려하여 그 [藩]帥가 없는 기회를 틈타 군사를 풀어 크게 약탈하였고 아울러 監軍 楊明義를 위협하여 范希朝를 번수로 삼도록 주청하게 하였다. 都虞候 楊朝晟이 그 군란의 수괴[亂首] 200여 명을 참수하고 서야 평정되었다. 조정에서 명을 내려 이에 범희조에게 장헌보를 돕게 하였다.<sup>20)</sup> 기미일(14일) 奚·室韋가 振武軍을 노략질하였다.<sup>21)</sup> 임술일(17일) 조서를 내려 太尉·中書令·西平郡王 李晟의 長子 [李]愿을 銀青光祿大夫·太子賓客에 임명하고 勳[官] 上柱國을 내렸다. 이성과 함께 문에 나란히 戟을 늘어세우게 하였다.<sup>22)</sup> 을축일(20일) 前撫州刺史 戴叔倫

18)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 6월 조, “夏縣人陽城以學行著聞, 隱居柳谷之北, 李泌薦之, 六月, 徵拜諫議大夫”(7514쪽).

19)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4년 6월 조, “己亥, 封子諫爲邕王”(196쪽).

20)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 7월 조, 7514쪽.

21)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 7월 조, “振武節度使唐朝臣不嚴斥候, 己未, 奚·室韋寇振武, 執宣慰中使二人, 大掠人畜而去. 時回紇之眾逆公主者在振武, 朝臣遣七百騎與回紇數百騎追之, 回紇使者爲奚·室韋所殺”(7514~7515쪽).

22) 『책부원구』 권131, 帝王部131, 延賞2, “詔以太尉·兼中書令·西平郡王晟長子試大理評事·兼監察御史愿爲銀青光祿大夫·太子賓客, 仍賜上柱國. 唐制, 公卿嫡嗣皆自命而后言于有司, 帝以晟功高, 特爲命嫡, 且寵異以兩階勳, 俾其父子竝建門戟”(1437쪽). 정병준, 『舊唐書』 권133, 李晟傳 譯註, 『동국사학』 58, 2015, 303~304쪽 참조.

을 容州刺史·兼御史中丞·本管經略使로 삼았다. 정축일(?) 兵部尚書 崔漢衡을 晉州刺史·晉慈隰觀察使로 삼았다. 임신일(27일) 조서를 내려 말하길 “嗣王·郡王의 朝會 때 班位는 本官의 班[位]의 위에 두도록 하라. 左右庶子는 少卿에 준하면 左右丞·侍郎의 아래, 諸司 4품의 위에 두는데, 지금 少卿의 아래에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땅히 이를 고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sup>23)</sup> 을해일(30일) 蘇州刺史 孫晟을 桂州刺史·桂管觀察使로 삼았다. 荊河는 陝州부터 河陰[縣]까지 물 색깔이 흑색과 같았는데, 汴[河] 입구로 유입된 뒤 汴州[城] [아래에] 이르러 하룻밤 만에 회복되었다. 또한 汴·鄭[州] 관내의 까마귀 떼가 모두 田緒·李納의 경내로 들어가 쉼을 물어다가 성을 쌓으니, 사망 10여리에 높이 2~3척이었다. 전서와 이납이 이를 불길하게 여겨 제거했는데, 2~3일 만에 원래대로 회복되었고 까마귀 입에서 모두 피가 흘렀다.<sup>24)</sup>

8월 權判吏部侍郎 吉中孚를 中書舍人에 임명하였다. 을유일(10일) 檢校司徒·兼太子太師·汧國公 李勉이 흥거하였다. 갑오일(19일) 경사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9월 병오일(2일) 조서를 내려 말하길,

근래 내외 백관들이 짐을 보좌하며 아침저녁으로 관부에서 여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지금 사망에 일이 없어 백성들이 평안하니, 정월 그믐날, 3월 3일(즉 上巳節), 9월 9일(즉 重陽節) 세 절일<sup>25)</sup>에 마땅히 문무백료에게 경치

23) 『通典』 권75, 禮35, 沿革35, 賓禮2, 天子朝位, “四年七月勅, ‘自今以後, 嗣·郡王宜列於本官班之上, 其庶子宜在少卿之上’”(中華書局, 2047쪽).

24) 『당회요』 권44, 雜災變, “[貞元四年]七月, 自陝州至河陰, 水盡黑, 其黑水流入汴河, 止於汴州城下, 一宿而復. 又鄭·汴二州羣鳥皆去界內, 入田緒·李納境內, 衝木爲城, 高二三尺. 緒·納令焚之, 信宿復如之, 鳥口多流血”(929쪽).

25) 정월 그믐, 상사절, 중양절은 당대의 대표적인 절일이다(단, 정월 그믐날은 정원 5년 중화절로 대체된다). 자세한 사항은 張澤咸, 『隋唐五代社會生活史』, 中國

좋은 곳을 골라 유람하며 즐기게 하라. 매 절일마다 宰相 및 常參官에게는 모두 전 500貫文, 翰林學士에게는 100관문, 左右神威·神策 등의 軍에는 매 廂마다 모두 전 500관문, 金吾·英武·威遠 및 諸衛의 將軍에게는 모두 전 200관문, 客省의 奏事[官]에게는 모두 전 100관문을 사여하니, 度支에서는 매 절일마다 5일 전에 지급하도록 하라. 영구히 常式으로 삼도록 하라.<sup>26)</sup>

라고 하였다. 무신일(4일) 진자습관찰사 최한형에게 都防禦使의 명호를 더하였다. 계축일(9일) 曲江亭에서 백료에게 연회를 베풀고 아울러 ‘重陽賜宴詩 6韻’을 지어 하사하였다. [다음날] 군신들이 창화를 마치자 황제가 그 우열을 품평하여 劉太眞·李紆를 상등, 鮑防·于邵를 차등, 張濂·殷亮 등 20인을 다시 그 다음 등급으로 삼았는데, 오직 李晟·馬燧·李泌 세 재상의 시는 우열을 논하지 않았다.<sup>27)</sup> 경신일(16일) 토번이 邠·寧·坊州 등을 노략질하였다.<sup>28)</sup>

겨울 10월 중서문하에 조서를 내려 常參官 가운데 일찍이 지방장관 [牧宰]이 되어 치적이 있었던 자를 선별하여 이름을 아뢰게 하였다. [갑신일(10일)] 宰臣들이 于頔·董晉 등의 12인이 이전 재임 시절에 치적이 있었다고 상주하자, 조서를 내려 우기 등에게 左·右丞廳에서 각각 정치의 요체를 말하게 하였고 左·右丞이 조목조목 상주하도록 하였다[條

社會科學出版社, 1998, 621~622쪽 및 625~627쪽; 中村裕一, 『中國古代の年中行事』 1, 汲古書院, 2009, 273~282쪽 및 635~682쪽; 中村裕一, 『中國古代の年中行事』 3, 汲古書院, 2010, 682~760쪽 등 참조.

26) 『당회요』 권29, 追賞, 정원 4년 9월 조, 630쪽; 『책부원구』 권110, 帝王部110, 宴享2, 1201쪽 참조.

27) 『당회요』 권29, 節日, 정원 4년 9월 조, 632~633쪽; 『책부원구』 권40, 帝王部40, 文學, 432쪽.

28) 『신당서』 권7, 吐蕃本紀, 정원 4년 9월 조, “吐蕃寇寧州, 邠寧節度使張獻甫敗之, 冬築夾城”(196쪽);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 9월 조, “吐蕃尚志董星寇寧州, 張獻甫擊卻之, 吐蕃轉掠鄜·坊而去”(7515쪽).

奏].<sup>29)</sup> 황제가 마침내 宣政殿(즉 大明宮의 中朝)에 거둥하여 그 말을 친히 시험한 뒤 그들을 임용하였다. 병술일(12일) 右神策將軍 李長榮을 河陽三城懷州團練使로 삼고 아울러 ‘元’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무자일(14일) 迴紇 公主가 妾媵 60여 인과 말 2천 필을 거느리고 咸安公主<sup>30)</sup>(즉 덕종의 8녀)를 맞이하러 오자, [11월 정미일(3일)] 刑部尚書 關播에게 명하여 회홀[蕃]로 출가하는 공주를 호송하도록 하였다.<sup>31)</sup>

12월 신사일(8일) 少府監 李觀이 졸하였다.

[정원] 5년(789) 봄 정월 임(갑?)진일이 초하루이다.<sup>32)</sup> 을묘일(12일) 조서를 내려 말하길,

사계절의 아름다운 절일이 역대로 증치되었으니, 漢은 上巳[節]을 숭상하였고 晉은 重陽[節]을 중시하였다. 혹설에는 재앙을 물리치고 煞됨을 제거한다고 하니, 비록 옛 풍속을 인습한 것이지만 백성들과 함께 즐겨왔던 것이므로 모두 시의에 합당하였다. 봄기운이 나돌기 시작하여 절기가 仲月에 이르면 초목이 완전히 싹트고 천지가 조화를 이루니, 짐이 그것을 소생시켜 마땅

29) 『책부원구』 권58, 帝王部58, 勤政, 정원 4년 10월 조, “甲申, 中書門下奏, ‘大理卿于頔 …… 吏部員外郎李渭曾任刺史, 司農卿薛珏 …… 倉部郎中龐訢曾任縣令, 及長安令賈申·萬年令李融, 並有理行.’ 於是令頔等與刺史言於左丞廳, 珏等於右丞廳, 言畢各條奏”(614~615쪽).

30) 『당회요』 권6, 和蕃公主, 87쪽 및 同, 雜錄, 정원 4년 10월 조, 88쪽; 『신당서』 권83, 諸帝公主, 德宗十一女傳, 3665쪽 등.

31) 『자치통감』 권233, 정원 4년 10월 및 11월 조, “回紇合骨咄祿可汗得唐許昏, 甚喜, 遣其妹骨咄祿毗伽公主及大臣妻并國相·跌都督以下千餘人來迎可敦, …… 冬, 十月, 戊子(14일), 回紇至長安, 可汗仍表請改回紇爲回鶻, 許之. …… 庚子(26일), 册命咸安公主, 加回鶻可汗長壽天親可汗. 十一月, 以刑部尚書關播爲送咸安公主兼册回鶻可汗使”(7515~7516쪽). 또 『구당서』 권130, 關播傳, 3628쪽; 『책부원구』 권979, 外臣部24, 和親傳, 11336~11337쪽 등 참조.

32)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5년(789) 정월 조, “甲辰朔, 日有食之”(196쪽).

히 무성하게 자라도록 돕고자 하노라. 지금 이후로 마땅히 2월 1일을 中和節로 삼아 정월 그믐날을 대체하여 三舍節의 숫자를 갖추도록 하고 内外官司에 하루의 휴가를 내리도록 하라.<sup>33)</sup>

라고 하였다. 宰臣 李泌이 [황제에게] 중화절 날<sup>34)</sup> 백관에게 농서를 진상하게 하고 사농사에서 늦벼와 올벼의 종자를 헌상하게 하며 왕공과 외척에게 춘복을 올리게 하고 사인과 백성에게 도척을 서로 주고받게 하며 村社에서 中和酒를 빚어 勾芒에 제사를 올려 풍년을 기원하도록 하게 청하니, 이를 따랐다. 정묘일(24일) 右散騎常侍·宜城縣子 柳渾이 졸하였다.

2월 기축일(16일?) 京兆尹 鄭叔則을 永州長史로 좌천시켰다. 무술일(15일) 滄景留後 程懷直을 滄景觀察使로 삼았다.<sup>35)</sup> 경자일(27일) 大理卿 董晉을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어사중승 두참을 中書侍郎·平章事·兼[度支]轉運使에 임명하였고 戶部侍郎 班宏을 호부상서에 임명하고 이전처럼 度支轉運副使로 하였다.<sup>36)</sup>

3월 갑진일(2일) 중서시랑·동평장사 이필이 졸하였다. 을묘일(13일) 兵部郎中 姚南仲을 御史中丞, 司農卿 薛珏을 京兆尹, 大理卿 李速을 黔州刺史·黔州觀察使로 삼았다. 계해일(21일) 資州刺史 龐復을 安南都護·本管經略使로 삼았다. 병인일(24일) 예부시랑 劉太眞을 信州刺史로

33) 『당회요』 권29, 節日, 633쪽.

34) 中和節(2월 1일)은 덕종 정원 5년(789)에 창설된 새로운 節日로, 上巳節(3월 3일)·重陽節(9월 9일)과 함께 당 후기 삼절의 하나이다. 중화절의 풍속에 대해서는 張澤咸, 『隋唐五代社會生活史』, 618쪽; 中村裕一, 『中國古代の年中行事』 1, 299~318쪽 등 참조.

35) 『자치통감』 권233, 정원 5년 2월 조, “戊戌, 以橫海留後程懷直爲滄州觀察使. 懷直請分弓高·景城爲景州, 仍請朝廷除刺史. 上喜曰, ‘三十年無此事矣!’ 乃以員外郎徐伸爲景州刺史”(7517쪽).

36) 『자치통감』 권233, 정원 5년 2월 조, 7517~7518쪽.

좌천시켰다. 給事中 杜黃裳을 河南尹에 임명하였다. 무진일(26일) 조서를 내려 李懷光의 外孫 燕八八을 左衛率府 冑曹參軍에 임명하고 李承緒라는 姓名을 내렸으며 아울러 錢 1천 관을 하사하여 스스로 가업[居業]을 경영하도록 하였다.<sup>37)</sup>

여름 4월 을미일(23일) 太子少師 蕭昕을 공부상서에 임명하였으며 致仕하자 절반의 祿·料를 지급하고 영구히 常式으로 삼게 하였다. 이전에 致仕官은 단지 절반의 祿만 지급받았을 뿐 料는 없었는데, 황제가 이를 더하여 老臣을 우대한 것이니 절반의 料는 소흔으로부터 비롯되었다.

5월 무진일(27일) 宋州에서 즐기 하나에 가지가 아홉인 보리 100여 뿌리를 [상주하였다].

6월 을미일(24일) 光祿卿 裴腆을 桂管觀察使로 삼았다.

가을 7월 嗣滕王 [李]湛然을 太子賓客·入迴紇使에 임명하였다.

8월 신미일(2일) 同州刺史 竇覲를 호부시랑에 임명하였다.

9월 임술일(23일) 조서를 내려 褚遂良 이하 李晟 등에 이르는 27인을 [추가하여] 凌煙閣에 초상을 걸어 국초 공신의 초상을 잇게 하였다.<sup>38)</sup>

겨울 10월 병오일(?) 西川の 韋臯가 東蠻과 힘을 합쳐 옛 巂州에서 토번을 대파하고 그 장수 臧遮遮를 사로잡았다고 상주하였다. 이로부터 토번의 예봉이 꺾여 마침내 수주를 수복하였다.<sup>39)</sup> 경오일(2일) 백료들이 徽

37) 『唐大詔令集』 권65, 大臣·錄勳, 「爲李懷光立後詔」, 中華書局, 361~362쪽. 『자치통감』 권233, 정원 5년 3월 조, “初, 上思李懷光之功, 欲宥其一子, 而子孫皆已伏誅. 戊辰, 詔以懷光外孫燕八八爲懷光後, 賜姓名李承緒, 除左衛率府冑曹參軍, 賜錢千緡, 使養懷光妻王氏及守其墓祀”(7519쪽).

38) 『당대조명집』 권65, 大臣·錄勳, 「令畫中宗以後功臣於凌煙閣制」, 362쪽. 『당회요』 권45, 功臣, “五年九月, 晟與侍中馬燧召見于延英殿, 上嘉其有大勳勞, 乃詔曰, ‘……’, 于是史官考其功績, 第其前後, 以褚遂良·蘇定方·郝處俊等二十七人充之. 復命皇太子書其文以賜晟, 刻石于門左”(946쪽).

39)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5년 9월 조, “丙午(7일), 劍南西川節度使韋臯敗吐蕃于臺登北谷, 克巂州”(196쪽); 『자치통감』 권233, 정원 5년 10월 조, “韋臯遣其

號를 회복하길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sup>40)</sup> 기축일(21일) 易定節度使 · 檢校司空 · 平章事 張孝忠이 멋대로 출병하여 蔚州를 습격하자 검교 사공을 좌복야로 강등시켰다.<sup>41)</sup> 계관관찰[사] · 어사중승 孫晟이 졸하였다. 계사일(25일) 호부시랑 두유를 揚州長史 · 兼御史大夫 · 淮南節度使로 삼았다.<sup>42)</sup>

12월 경오일(3일) 회흘의 汨咄祿長壽天親毘伽可汗이 졸하였다.<sup>43)</sup> 신미일(4일) 회남절도사 杜亞를 東都留守 · 畿汝州都防禦使, 병부시랑 裴諤를 河南尹, 사농경 李翼을 陝虢都防禦觀察使로 삼았다. 임신일(5일) 섬괘 관찰사 두우를 검교예부상서 · 겸양주장사 · 회남절도사로 삼았다.

[(新羅 元聖王) 5년(789) (金俊邕 즉 이후의 昭聖王)이 사행을 받들어 입당하여 大阿飡의 位를 받았다.]<sup>44)</sup>

[정원 6년(790) 봄 정월 무진(술?)일이 초하루이다. 무신일(11일) 큰 눈이 내렸다.

2월 무진삭 백료들에게 곡강정에서 연회를 베풀며 황제가 ‘中和節羣臣賜宴 7운’을 지었다. 이날 백료들이 『兆人本業』 3권을 진상하였고 사농

將曹有道將兵與東蠻 · 兩林蠻及吐蕃青海 · 臘城二節度戰于嵩州臺登谷, 大破之, 斬首二千級, 投崖及溺死者不可勝數, 殺其大兵馬使乞藏遮遮, 乞藏遮遮, 虜之驍將也, 既死, 梟所攻城柵無不下. 數年, 盡復嵩州之境”(7519쪽).

40) 『당대조령집』 권6, 帝王 · 尊號批答, 『批答百僚請復尊號表』, 39쪽.

41) 『전당문』 권52, 덕종황제3, 『復張孝忠官爵詔』, 565쪽. 『자치통감』 권233, 정원 5년 10월 조, “易定節度使張孝忠興兵襲蔚州, 驅掠人畜, 詔書責之, 踰旬還鎮”(7519쪽).

42) 『구당서』 권183, 竇親傳, “數月, 爲揚州大都督府長史 · 御史大夫 · 充淮南節度副大使 · 知節度事, 既非德舉, 人咸薄之. 赴鎮旬日, 暴卒, 詔贈禮部尚書”(4749쪽).

43) 『자치통감』 권233, 정원 5년 12월 조, “庚午, 聞回鶻天親可汗薨, 戊寅(11일), 遣鴻臚卿郭鋒册命其子爲登里羅沒密施俱錄忠貞毗伽可汗. ……”(7520쪽).

44)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 소성왕 5년 조, “奉使入唐, 受位大阿飡”(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上, 을유문화사, 1996, 275쪽).

시에서 기장과 조 각각 1두씩 바쳤다. 岐州 無憂王寺에는 한 치 남짓한 부처의 손가락뼈[佛指骨] [사리가] 있어 앞서 禁中으로 가져와 供養하였는데, 을해일(8일) 조서를 내려 본사로 送還하였다.<sup>45)</sup> 병술일(19일) 中書舍人 陸贄를 權兵部侍郎에 임명하였다. 갑오일(27일) 吏部侍郎 劉滋를 吏部尚書에 임명하였다. 정유일(30일) 棣州를 지키던 王武俊의 장수 趙鎬가 郡을 가지고 李納에게 귀순하자, 왕무준이 분노하여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였다.<sup>46)</sup>

3월 경자일(3일) 백료들에게 곡강정에서 연회를 베풀며 황제가 ‘上巳詩 1篇’을 지어 하사하였다. 임인일(5일) 渾瑊이 河中에서 來朝하였다. 무오일(21일) 牂柯蠻이 내조하였다. 갑자일(27일) 가뭄으로 햇빛이 핏빛과 같았고 광채가 없었다.

여름 4월 갑진일(?) 폭풍과 우레가 쳤다.

윤4월 경신일(24일) 太白·辰星이 東井에 모였다. 무오일(22일?) 비로 소 비가 내렸다.<sup>47)</sup>

5월 병인삭 황제가 紫宸[殿](즉 대명궁의 內朝)에 거둥하여 조하를 받았다. 황제가 이달 하짓날[一陰生]에는 신하와 자식의 도가 생장하므로 부자가 반드시 이달 초하루에 대면한다는 이유로 朔日을 취하여 조하를 받았다. 임오일(17일) 寧州刺史 범희조를 單于大都護·麟勝節度使로 삼았다.

45) 『자치통감』 권233, 정원 6년(790) 2월 조, “春, 詔出岐山無憂王寺佛指骨迎置禁中, 又送諸寺以示眾, 傾都瞻禮, 施財巨萬. 二月, 乙亥, 遣中使復葬故處”(7520쪽).

46) 『자치통감』 권233, 정원 6년 조, “[二月] … 初, 朱滔敗於貝州, 其棣州刺史趙鎬以州降於王武俊, 既而得罪於武俊, 召之不至. 田緒殘忍, 其兄朝, 仕李納爲齊州刺史. 或言納欲納朝於魏, 緒懼. 判官孫光佐等爲緒謀, 厚賂納, 且說納召趙鎬取棣州以悅之, 因請送朝於京師, 納從之. 丁酉, 鎬以棣州降于納. 三月, 武俊使其子士真擊之, 不克”(7520~7521쪽).

47) 『신당서』 권7 정원 6년 조, “春, 旱”(197쪽).

이해 여름 淮南·浙東·[浙]西·福建道 등에 가뭄이 들어 우물과 샘이 대부분 고갈되자, 백성들이 갈증으로 피폐해졌고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많았다.

가을 7월 병인일(2일) 회남절도사 두유가 졸하였다. 계유일(9일) 다시 친왕의 모친을 太妃, 공주의 모친을 太儀라 불렀다.

8월 정미일(14일) 공부상서로 致仕한 鮑防이 졸하였다.

9월 을축일(2일) 諸道 進奏院의 官印을 수거하여 모두 파훼하였다. 기묘일(16일) 조서를 내려 말하길 “11월 8일에 南郊와 太廟에서 제사를 지낼 것인데[有事], 行從하는 官吏와 將士 등은 일체 모두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하라. 이전부터 公廚(즉 관청의 조리장)가 없었던 諸司의 경우에는 本司 闕職의 物로 충당하도록 하라. 王府官은 度支에서 헤아려 양식[廩物]을 지급하라. 儀仗禮物은 모두 御史가 알맞게 조절[撙節]하여 처분하라”라고 하였다.

겨울 10월 기해일(7일) 문무백료와 경성의 도사·속인들이 표문을 올려[抗表] 휘호를 청하니, 황제가 말하길 “봄여름의 오랜 가뭄으로 곡식이 여물지 않아 짐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자 단비가 내려 풍년이 드니, 짐이 郊廟에 감사를 고하였다. 짐이 만일 제사를 지낸 것으로 인해 휘호를 받는다면 이는 이를 위해 한 것이 되므로 굳이 청하여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신해일(19일) 迴紇弔祭使·鴻臚卿 郭鋒이 임무를 보고하였고[復命], 회홀은 達北[特]勒 梅錄 將軍을 보내 와서 九姓迴紇 登里邏沒密施俱錄忠貞毘伽可汗의 喪을 고하였다.

11월 경오일(8일) 동짓날[日南至] 황제가 친히 郊丘에서 昊天上帝에게 제사지냈다. 의례를 마치고 환궁한 뒤 丹鳳樓로 나가 赦를 선포하고 현재 수감된 죄수[見禁囚徒]<sup>48)</sup>에게 죄 1등을 감면하였다. 의장을 세웠던

48) 見禁囚徒는 見繫囚徒 혹은 繫囚·見徒라고도 하였다. 繫囚는 범죄가 발각된 후

장졸 및 諸軍의 병사들에게 18만 段匹을 사여하였다. 지금 이후로 자사·현령은 4考를 기한으로 삼았다.<sup>49)</sup> 靑州의 李納이 체주를 왕무준에게 반환하고 아울러 그 병사 3천 명을 [돌려보냈다].<sup>50)</sup>

이 해에 토변이 우리 北庭都護府를 함락시키자 절도사 楊襲古가 西州로 달아났다. 회홀의 大相 頡干迦斯가 양습고를 속여 군사를 합쳐 북정을 수복하길 청한 뒤 마침내 양습고를 살해하니, 안서는 이 때문에 가로막혔고 오직 서주만 아직 굳게 지켰다. 회홀 역시 토변의 핏박을 당해 浮圖川을 빼앗기자 마침내 부락의 양과 말을 아장의 남쪽으로 옮겨 이를 피하였다.<sup>51)</sup>

[(신라) 元聖王 6년(790) (金彦昇 즉 이후의 憲德王이) 大唐으로의 사행을 받들어 大阿飡의 位를 받았다].<sup>52)</sup>

[정원] 7년(791) 봄 정월 임술일이 초하루이다. 기사일(8일) 襄王 [李] 橫이 흥거하였다. 경진일(19일) 湖南觀察使 裴胄를 洪州刺史·江西觀察使, 常州刺史 李衡을 潭州刺史·湖南觀察使로 삼았다. 蔡州에 汝南縣을

---

수감되어 조사를 받는 자, 見徒는 판결 후 徒役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말이다. 정병준, 『新羅 文武王 9년(669) 赦書에 보이는 ‘五逆’의 再檢討』, 『동국사학』 62, 2017, 131쪽의 각주 13 등 참조.

49) 『당대조령집』 권70, 典禮·南郊4, 「貞元六年南郊赦」, “立仗將士及守營者, 共賜十八萬段疋. …… 天下見禁囚徒, 罪至流死者, 各遞減一等, 徒罪已下一切放免. …… 自今, 刺史·縣令, 以四考爲限”(389~390쪽);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6년 11월 조, “戊辰(6일), 朝獻于太清宮. 己巳(7일), 朝享于太廟. 庚午, 有事于南郊. 賜文武官階·爵. 降囚罪, 徒以下原之. 葬戰亡暴骨者”(197쪽).

50) 『자치통감』 권233, 정원 6년 12월 조, “上屢詔李納以棗州歸王武俊, 納百方遷延, 請以海州易之於朝廷, 上不許. 乃請詔武俊先歸田緒四縣, 上從之. 十二月, 納始以棗州歸武俊”(7522쪽).

51) 『자치통감』 권233, 정원 6년 6월 조, 7521~7522쪽.

52)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헌덕왕 조, “元聖王六年, 奉使大唐受位大阿飡”(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上, 276쪽).

설치하였다. 黑衣大食이 사신을 파견하여 朝貢하였다. 중서사인 韓臯를  
 어사증승에 임명하였다. [(渤海 文王 大興 55년/791년 정월) 사신을 보내  
 來朝하니, (5월) 그 사신 大常靖에게 衛尉卿同正을 제수하여 본국(蕃)으  
 로 돌려보냈다].<sup>53)</sup>

2월 기사(무술?)일(7일) 경원의 변수 유창이 다시 平涼城을 축성하였  
 다. 평량성은 옛 原州에서 150리 떨어져 있는데, 본래 원주의 속현으로  
 지세가 용적을 제어할 만한 요충지에 해당한다. 유창이 다시 열이틀[浹  
 辰] 만에 공사를 마치고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니, 변경의 우환이 점차  
 해소되었다.<sup>54)</sup> 경자일(9일) 시중 혼감이 河中에서 내조하였다.

3월 신유[삭] 陳許節度使 曲環이 當道の 冗官을 잠시 정직시키[權停]  
 1~2년 후 민력이 점차 풍족해지면 복구시키길 주청하였다. 임술일(2일)  
 左龍武統軍 戴休顏이 졸하였다. 갑자일(4일) 경원절도사 유창이 胡谷堡  
 를 축조하자 [조서를 내려] 彰義堡로 개명하였다. 창의보는 평량성에서  
 서쪽으로 35리에 있는데 역시 용적을 제어할 만한 요충지이다.<sup>55)</sup> 임신일

53) 『구당서』 권199하, 발해말갈전, “建中三年五月·貞元七年正月, 皆遣使來朝, 授  
 其使大常靖為衛尉卿同正, 令還蕃”(5362쪽). 한편 『책부원구』 권976, 外臣部21,  
 褒異3에는 “[貞元]七年五月戊辰(9일), 以渤海賀正使大常靖為衛尉卿同正, 令還  
 國”(11295쪽)라고 하여, 『구당서』 발해말갈전과 약 5개월의 시차를 보인다. 이에  
 대하여 『책부원구』의 ‘5월’을 정월의 오기로 추정하기도 하지만(김종복, 「발해 건  
 당사(遣唐使)에 대한 기초적 검토」, 장재진 외, 『발해 대외관계사 자료 연구』, 동  
 북아역사재단, 2011, 43쪽), 여기서는 김육불의 설에 따라 대상정이 정월에 입조  
 하였다가 5월에 귀국한 것으로 보았다(김육불, 발해사연구회 역, 『신편 발해국  
 지장편』 상, 신서원, 2008, 304쪽).

54) 『책부원구』 권410, 將帥部71, 壁壘, 劉昌 조, “七年, 又城平涼, 以扼彈箏峽口, 命  
 徒庀事, 旬日而畢, 詔曰, ‘平涼當四會之衝, 居北地之要, 劉昌請城於茲, 分兵保  
 戍, 實以遏其要衝, 保寧邊鄙.’ 平涼, 固原州屬縣, 在原州西一百五十里, 令昌董  
 率諸軍城之, 度支饋運, 浹辰而畢, 仍分兵戍之, 地當走集, 得守固之要, 器械糧穀  
 頗豐, 而人安焉”(4644쪽).

55) 『자치통감』 권233, 정원 7년(791) 3월 조, “昌又築朝谷堡, [호삼성 주: 『舊唐書』作

(12일) 조서를 내려 말하길 “근래 의복을 사여할 때 문양이 일정하지 않으니, 이는 제도에 합당하지 않다. 짐이 이제 이를 고려하여 마땅히 일정한 제도를 갖추하고자 하니, 절도사는 마땅히 매가 인끈을 머금고 있는 것[鶻銜綬帶]으로 하고 관찰사는 기러기가 威儀를 머금고 있는 것[雁銜威儀]으로 하라”<sup>56)</sup>라고 하였다. 威儀는 상서로운 풀이다. 關輔의 소가 전염병으로 죽어 열에 대여섯이 죽었다. 황제가 中使를 보내 諸道の 兩稅錢으로 소를 사서 畿民 가운데 소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신사일(21일) 조서를 내려 말하길 “神威·神策의 六軍將士가 자신들끼리 서로 소송할 경우에는 軍司에서 推劾하도록 하라. 백성과 서로 소송할 경우에는 府縣에 위임하여 推劾하되 小事는 [本軍에] 移牒하고 大事는 상주하여 처분을 취하도록 하라. 軍司와 府縣은 서로 침범하지 말라”<sup>57)</sup>라고 하였다. 계미일(23일) 義武軍節度使·檢校司空·平章事 장효충이 졸하였다.

여름 4월 경자일(10일) 태자소사·치사 소흔이 졸하였다. 汴州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 무오일(28일) 조서를 내려 말하길

仲夏의 시절에는 만물이 화창함을 펼쳐 양기가 바야흐로 융성해지고 음기가 이를 이어받기 시작한다. 옛날 만물의 현상을 살펴보건대 천지가 교접

‘胡谷堡’，東距平涼三十五里。甲子，詔名其堡曰彰信，[호삼성 주: 『舊書』作彰義]。涇原稍安”(7523쪽).

56) 『전당문』 권52, 덕종황제3, 「定章服詔」, 565~566쪽.

57) 『자치통감』 권233, 정원 7년 3월 조, “初，上還長安，以神策等軍有衛從之勞，皆賜名興元元從奉天定難功臣，以官領之，撫恤優厚。禁軍恃恩驕橫，侵暴百姓，陵忽府縣，至詬辱官吏，毀裂案牘。府縣官有不勝忿而刑之者，朝笞一人，夕貶萬里，由是府縣雖有公嚴之官，莫得舉其職。市井富民，往往行賂寄名軍籍，則府縣不能制。辛巳，詔，‘神威六軍吏士與百姓訟者，委之府縣，小事牒本軍，大事奏聞。若軍士陵忽府縣，禁身以聞，委御史臺推覆。縣吏輒敢笞辱，必從貶謫’”(7523~7524쪽).

하는 질서에 따라 부자 상견의 예의가 만들어졌는데, 습속을 인습하여 풍속을 이룬 것이 고금 이래로 바뀌지 않았다.王者가 정사를 돌보는 것은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는 데에 있으니, 그 사정을 헤아려 중간을 취하고 그 풍속을 따라 예의로 삼아야 한다. 두루 상견하는 예의가 이미 부자지간에 행해지고 있으니, 이러한 사정에 의거한다면 어찌 군신지간이라고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卿士에게 은혜를 펼쳐 나부터 시작할 것이다. 금년 5월 초하루부터 正殿(즉 선정전)에 거동하여 文武百官을召回할 것이니, [京官 9품 이상과] 外官 가운데 초참[朝奏] 때문에 [경사에 있는 자는] 모두 [朝]列에 나아가도록 하라. 아울러 禮式을 편찬하여 常典으로 삼도록 하라.<sup>58)</sup>

라고 하였다. 기미일(29일) 安南의 首領 杜英翰이 叛하여 도호부를 공격하자 都護 高正平이 근심으로 죽었다.<sup>59)</sup>

5월 경신삭 황제가 宣政殿에 거동하여 백관을 [召]見하였는데, 새로운 제도를 따른 것이다. 신미일(22일) 安南都護府에 柔遠軍을 설치하였다. 갑신일(25일) 端王 [李]遇가 흉거하였다. 許州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 무자일(29일) 衡州刺史 齊映을 桂管觀察使로 삼았다.

6월 경자(인?)일이 초하루이다. 을사일(16일) 太常卿 崔縱이 졸하였다.

가을 7월 경오일(11일) 信州刺史 鄭叔則을 福建觀察使로 삼았다. 계유일(14일) 황제가 章敬寺에 행차하여 시 9韻을 지었고 황태자와 군신들이 창화를 마치자 장경사 벽에 이를 적었다[題]. 무인일(19일) 邕王 [李]

58) 『당대조령집』 권80, 典禮·朝賀, 「五月一日御宣政殿赦」, “……自今以後, 每年五月一日, 御宣政殿, 與文武百僚相見, 京官九品以上, 外官因朝參在京者, 並聽就列. 宜令所司, 卽量定儀注頒示, 仍編禮式, 以著恒規”(457~458쪽).

59)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7년 4월 조, “安南首領杜英翰反, 伏誅”(197쪽); 『자치통감』 권233, 정원 7년 4~5월 조, “安南都護高正平重賦斂, 夏, 四月, 羣蠻酋長杜英翰等起兵圍都護府, 正平以憂死, 羣蠻聞之皆降. [호삼성 주: 史言蠻非好亂, 苦於貪帥而亂]. 五月, 辛巳, 置柔遠軍於安南”(7524쪽).

諫을 義武軍節度使·易定觀察等大使로 삼고 定州刺史 張昇雲을 留後에 임명하였다. 경진일(21일) 度州刺史 趙昌을 安南都護·經略招討使로 삼았다.

8월 기축[삭] 翰林學士 歸從敬을 공부상서에 임명하였다. 갑오일(6일) 급사중 鄭瑜를 중서사인에 임명하였다. 병신일(8일) 宗正卿 李翰을 雅王 傅로 좌천시키고, 한림학사 육지를 병부시랑에 임명하고 학사를 파하였다. 경술일(22일) 夏州에서 延化渠를 개착하여 烏水를 끌어다 庫狄澤에 유입시키고 농지 200頃에 관개하였다고 상주하였다. [(渤海 文王 大興 55년/791년) 8월 그 王子 大貞翰이 來朝하여 宿衛할 것을 청하였다].<sup>60)</sup>

9월 경신일(2일) 병부상서로 致仕한 馬炫이 졸하였다.

겨울 10월 계축일(26일) 延英[殿]으로 거동할 때마다 諸司의 장관[官長] 2인에게 本司의 사안을 상주하게 하였다. 이윽고 다시 칙서를 내려 상참관을 하루에 두 사람씩 引對하여 정사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는데 [訪], 이를 ‘巡對’(혹은 ‘次對’)<sup>61)</sup>라고 하였다.<sup>62)</sup>

11월 을축일(9일) 상참관에게 조회에 나아가 入閣할 때에는 분주하지 말도록 하였다. 周親 이하의 상을 당한 자는 慘服을 금지하였고 조회 때 모름지기 本色의 綾袍와 金玉帶를 착용하게 하였다.<sup>63)</sup>

60) 『구당서』 권199하, 발해말갈전, “[貞元七年]八月, 其王子大貞翰來朝, 請備宿衛”(5362쪽).

61) ‘巡對’(혹은 ‘次對’)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松本保宣, 『唐代後半期の待制·次對官』, 『唐王朝の宮城と御前會議—唐代聽政制度の展開』, 晃洋書房, 2006, 90~125쪽 참조. 아울러 松本保宣은 “정원 7년(791)에 延英殿에 설치된 待候官이 황제의 制詔를 기다리는 ‘待制’가 아니라 순번에 따라 황제를 알현하는 ‘巡對’ 혹은 ‘次對’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미 시간적 제약이 느슨한 전반기의 그것이 아니라 의식 절차 안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시스템화되어 간 후반기 待候制度의 추세를 상징하는 것이다”(120쪽)라고 설명하였다.

62) 『책부원구』 권58, 帝王部58, 勤政, 정원 7년 10월 조, 615쪽.

63) 『당회요』 권24, 朔望朝參, “七年十一月詔, ‘常參官入閣, 不得奔走. 其有周以下喪

[12월] 정유일(11일) 前북건관찰사 吳湊을 陝州長史·陝虢觀察使로 삼았다.<sup>64)</sup>

이 해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정원] 8년(792) 봄 정월 병진일이 초하루이다. 계유일(18일) 桂管經略 招討使를 폐지하였다.

2월 정해일(2일) 許州 사람 李狗兒가 몽둥이를 들고 함원전에 난입하여 난간을 두드리며 또 [자신을] 사로잡으려는 자를 때렸다. 그를 주살하였다. 경자일(15일) 경사에 흠비가 내렸다. 기유일(24일) 이부상서 李紓(서)가 졸하였다.

[3월] 을축일(11일) 山南東道節度使·檢校戶部尚書 嗣曹王 [李]肅가 흥거하였다. 경오일(16일) 宣武軍節度使·司徒·平章事 劉玄佐가 졸하였다.<sup>65)</sup> 계유일(19일) 劍南西川節度使 韋臯가 상주하여 當道 閑員官吏의 俸祿을 늘리길 청하자 이에 따랐다. 을해일(21일) 湖南觀察使 李衡을 洪州刺史·江西觀察使로 삼았다. 襄州에서 軍亂이 일어나 府庫의 民財를 거의 다 노략질하여 都將 徐誠이 그 반란의 수괴 楊清潭을 참수하니 바야흐로 그쳤다. 병자일(22일) 荊南節度使 樊澤을 襄州刺史·山南東道節度使, 江西觀察使 裴胄를 江陵尹·荊南節度使로 삼았다.<sup>66)</sup> 호부상서 班

---

者, 禁褻服, 朝會服衣綾袍金玉帶. 初, 金吾將軍沈房有弟喪, 公服不衣, 褻服入門. 上問宰臣, 董晉對曰, “准式, 朝官有周以下喪者, 許服絕纒衣, 不合淺色.” 上曰, “南班何得有之?” 對曰, “因循而然.” 又曰, “在式, 朝官皆以綾為袍, 五品以上服金玉帶, 取其文綵華飾, 以奉上也. 昔尚書郎含香, 此意也.”(543~544쪽). 아울러 『책부원구』 권60, 帝王部60, 立制度, 정원 7년 11월 조, 639쪽 참조.

64) 『자치통감』 권233, 정원 7년 12월 조, “福建觀察使吳湊, 為治有聲, 竇參以私憾毀之, 且言其病風. 上召至京師, 使之步以察之, 知參之誣, 由是始惡參. 丁酉, 以湊為陝虢觀察使以代參黨李翼.”(7525쪽).

65)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8년(792) 3월 조, “甲申(30일), 宣武軍節度使劉玄佐卒, 其子士寧自稱留侯.”(198쪽).

宏을 判度支, 호부시랑 張滂을 諸道鹽鐵轉運使에 임명하였다.<sup>67)</sup> 기묘일(25일) 陝虢觀察使 吳湊을 汴州刺史·宣武軍節度·汴宋等州觀察使로 삼았다. 신사일(27일) 同州刺史 姚南仲을 陝虢觀察使로 삼았다. 임오일(28일) 左庶子 李充을 京兆尹, 蘇州刺史 齊抗을 潭州刺史·湖南觀察使로 삼았다.

여름 4월 정축(해?)일(3일) 左金吾大將軍·嗣虢王 [李]則之를 昭州司馬, 左諫議大夫·知制誥 吳通玄을 泉州司馬, 給事中 竇申을 道州司馬로 좌천시켰다.<sup>68)</sup> 무자일(4일) 아왕부 이한을 금오위대장군에 임명하였다. 이한은 이전에 두참의 미움을 받아 좌천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두참이 실각하자 황제가 급히 이한을 불러 장군에 口授(즉 구두에 의한 제수)하고 바로 금오위의 의장병[金吾仗]을 시켜 부임하도록 한 뒤 다음날 관직 제수의 조서[除書]를 비로소 내렸다. 경인일(6일) 汴州長史 劉士寧을 汴州刺史·宣武軍節度使로 삼았다. 당시 오주는 汜水에 이르렀는데 선무군에서 변란이 일어났음을 듣고는 돌아왔다.<sup>69)</sup> 을미일(11일) 중서시랑·

66)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3월 조, “山南東道節度判官李實知留後事, 性刻薄, 裁損軍士衣食. 鼓角將楊清潭帥眾作亂, [호삼성 주: 鼓角將, 掌軍中鼓角者也] 夜, 焚掠城中, 獨不犯曹王舉家. 明旦, 都將徐誠縵城而入, 號令禁遏, 然後止. 收清潭等六人斬之. …… 丙子, 以荊南節度使樊澤為山南東道節度使”(7527쪽).

67)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3월 조, “初, 竇參為度支轉運使, 班宏副之. 參許宏, 俟一歲以使職歸之, 歲餘, 參無歸意, 宏怒. 司農少卿張滂, 宏所薦也, 參欲使滂分主江·淮鹽鐵, 宏不可, 滂知之, 亦怨宏. 及參為上所疏, 乃讓度支使於宏, 又不欲利權專歸於宏, 乃薦滂於上, 以滂為戶部侍郎·鹽鐵轉運使, 仍隸於宏以悅之”(7527쪽).

68)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4월 조, “竇參陰狡而復, 恃權而貪, 每遷除, 多與族子給事中申議之. 申招權受賂, 時人謂之‘喜鵲’. 上頗聞之, 謂參曰, ‘申必為卿累, 宜出之以息物議.’ 參再三保其無他, 申亦不悛. 左金吾大將軍虢王則之, 巨之子也, 與申善, 左諫議大夫·知制誥吳通玄與陸贄不叶, 竇申恐贄進用, 陰與通玄·則之作謗書以傾贄, 上皆察知其狀. 夏, 四月, 丁亥, 貶則之昭州司馬, 通玄泉州司馬, 申道州司馬, 尋賜通玄死”(7527~7528쪽).

평장사 두참을 郴州別駕, 두신을 景州司戶에 좌천시켰다. 이윽고 두신을 杖殺하였고 두씨 일족이 모두 좌천되었다. 상서좌승 趙憬, 병부시랑 陸贄를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에 임명하였다. 정유일(13일) 韋阜가 2/10를 징세하여 관리에게 지급하길 청하자 이를 따랐다. 병오일(22일) 동도·하남·회남·강남·영남·산남동도의 양세 등의 재물은 호부시랑 張滂에게 주관하게 하였고 하나·하동·김남·산남서도 등의 재물은 호부상서·판탁지 班宏에게 주관하게 하였다. 대력 연간(766~779)의 故事를 한결같이 준수하여 劉晔·韓滉이 나누어 관장하였던 것과 같았다.<sup>70)</sup> 급사중 韋夏卿이 常州刺史에 좌천되었는데, 두씨 일족과 결탁하였던 일에 연좌된 것이다. 이달 토변이 靈州를 노략질하였다.<sup>71)</sup>

5월 을묘삭 황제가 선정전에 거동하여 조하를 받았다. 병진일(2일) 처음으로 경조부의 靑苗[田]에 1무당 3전을 증세하여 掌閑·曠騎에게 지급하였다. 무오일(4일) 光祿少卿 崔穆을 黔州觀察使로 삼았다. 기미일(5일) 큰 바람이 불어 민가와 門闕이 날아가고 무너졌다.<sup>72)</sup> 병인일(12일) 大理卿 王翹을 복건관찰사로 삼았다. 무진일(14일) 처음으로 臺省官(즉 御史臺·三省의 관직)에 제수된 자는 각각 관직 제수의 조서에 舉主(즉 천거

69)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4월 조, “劉玄佐之喪, 將佐匿之, 稱疾請代, 上亦為之隱, 遣使即軍中問以陝虢觀察使吳湊為代可乎? 監軍孟介·行軍司馬盧瑗皆以為便, 然後除之. 湊行至汜水, …… 玄佐之壻及親兵皆被甲, 擁玄佐之子士寧釋衰經, 登重榻, 自為留後. …… 士寧以財賞將士, 劫孟介以請於朝. 上以問宰相, 竇參曰, ‘今汴人指李納以邀制命, 不許, 將合於納.’ 庚寅, 以士寧為宣武節度使”(7528쪽).

70)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4월 조, “張滂請鹽鐵舊簿於班宏, 宏不與, 滂與宏共擇巡院官, 莫有合者, 闕官甚多. 滂言於上曰, ‘如此, 職事必廢, 臣罪無所逃.’ 丙午, 上命宏·滂分掌天下財賦, 如大曆故事”(7530쪽).

71)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4월 조, “吐蕃寇靈州, 陷水口支渠, 敗營田. 詔河東·振武救之, 遣神策六軍二千戍定遠·懷遠城, 吐蕃乃退”(7530~7531쪽).

72)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8년 5월 조, “己未, 大風發太廟屋瓦”(198쪽).

인)의 [이름을] 갖추게 하였다. 이전에 郎官이 결원이면[缺] 左·右丞이 천거하였고 御史가 결원이면 大夫·中丞이 천거하였는데, 조서에 천거한 자의 [이름을] 갖추지는 않았다. 조정과 육지가 재상이 되자 낭관을 좌·우승에 전담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 상서·승·낭에게 각각 그 [제수할] 만한 자를 천거하게 하여 조서에 천거한 자의 관직과 이름을 갖추게 하고 어사 역시 이와 같이 하여 다른 날 [피천거인의] 殿最를 고과하면서 舉主가 천거를 잘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도록] 건의하였는데, 이를 따랐던 것이다.<sup>73)</sup> 계유일(19일) 平盧淄青節度使·檢校司徒·平章事 李納이 졸하였다.<sup>74)</sup> 계미일(29일) 前태복소경 劉士幹이 죄를 지어 사사되었는데, 유현좌의 양자이다.<sup>75)</sup>

6월 토번이 涇州를 노략질하였다.<sup>76)</sup>

가을 7월 갑인삭 戶部尚書·判度支·蕭國公 반공이 졸하였다. 계관 관찰사 齊映을 洪州刺史·江西觀察使로 삼았다. 한림학사 歸崇敬을 병부상서에 임명하니 치사하였다. 신사일(28일) 큰 비가 내렸다. [(신라 元聖王 8년/792년) 7월 당에 사신을 보내 美女 金井蘭을 바치니, 그녀는 國色으로 몸에서 향기가 났다].<sup>77)</sup>

73)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5월 조, “陸贄請令臺省長官各舉其屬, 著其名於詔書, 異日考其殿最, 并以升黜舉者. [호삼성 주: 所舉得人, 則升舉主以昭進賢之賞, 所舉非人, 則黜舉主以昭失舉之罰] 五月, 戊辰, 詔行贄議. ……”(7531~7532쪽). 아울러 『당회요』 권57, 尚書省諸司上, 1157쪽 참조.

74)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8년 5월 조, “癸酉, 平盧軍節度使李納卒, 其子師古自稱留侯”(198쪽);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5월 조, “癸酉, 平盧節度使李納薨, 軍中推其子師古知留侯”(7532쪽).

75) 정병준, 『舊唐書』·『新唐書』 劉玄佐傳 譯註, 『역사와교육』 16, 2013, 295~296, 299쪽 참조.

76)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8년 6월 조, “吐蕃寇連雲堡, 大將王進用死之”(198쪽);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6월 조, “吐蕃千餘騎寇涇州, 掠田軍千餘人而去. [호삼성 주: 田軍, 屯田之軍也]”(7532쪽).

77)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원성왕 8년(792) 7월 조, “遣使入唐, 獻美女金井蘭,

8월 을축(유?)일(3일) 천하에 수해가 일어나자 朝臣을 나누어 宣撫하고 賑貸하게 하였다.<sup>78)</sup> 하남·하북·산남·강희의 무릇 40여 주에 큰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2만여 명이였다.<sup>79)</sup> 신묘일(9일) 靑州刺史 李師古를 鄆州大都督府長史·平盧淄靑等州節度觀察海運陸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에 임명하였다.<sup>80)</sup> 정미일(25일) 조서를 내려 흉년으로 九日賜宴(즉 重陽節의 賜宴)을 파하였다.<sup>81)</sup>

9월 정사일(5일) 韋臯가 토번의 維州를 공격하여 토번의 장수 論莽熱을 사로잡아 바쳤다. 태자빈객 우소를 江州別駕에 좌천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졸하였다. 을해일(23일) 태자빈객 설각을 嶺南節度使로 삼았다.

겨울 10월 기해일(17일) 故 皇弟 [李]遐를 均王에 追封하였다. 경술일(28일) 다시 金吾[衛]에 門籍을 두도록 명하였다.

11월 임자삭 일식이 있었다. 기사일(18일) 右庶子 姜公輔를 泉州別駕로 좌천시켰다.<sup>82)</sup> [경오일(19일)] 嚴震이 芳州에서 토번을 격파하였다고 상주하였다.<sup>83)</sup> 임신일(21일) 조서를 내려 지금 이후부터 死刑을 [행할

其女國色身香”(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上, 274쪽).

78) 『당대조령집』 권116, 政事·慰撫中, 「遣使安撫水災諸州詔」, 609쪽.

79)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7월 조, “河南·北·江·淮·荆·襄·陳·許等四十餘州大水, 溺死者二萬餘人, 陸贄請遣使賑撫. …… 八月, 遣中書舍人京兆奚陟等宣撫諸道水災”(7533~7534쪽).

80)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8월 조, “以前靑州刺史李師古爲平盧節度使”(7534쪽).

81) 『당대조령집』 권80, 典禮·宴集, 「以水災罷九日宴會赦」, 459쪽.

82)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11월 조, “左庶子姜公輔久不遷官. 詣陸贄求遷. 贄密語之曰, ‘聞竇相屢奏擬, 上不允. [호삼성 주: 今人謂聖旨不從所請爲不允, 習聞唐人之言也], 有怒公之言.’ 公輔懼, 請爲道士. 上問其故, 公輔不敢泄贄語, 以聞參言爲對. 上怒參歸怨於君, 己巳, 貶公輔爲吉州別駕, 又遣中使責參”(7537쪽).

83) 『자치통감』 권234, 정원 8년 11월 조, “庚午, 山南西道節度使嚴震奏敗吐蕃於芳州及黑水堡”(7538쪽).

때] 先杖을 집행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勿決先杖].<sup>84)</sup>

12월 경인일(9일) 조서를 내려 수해를 당한 현의 乏絶한 호에 쌀 30만 석을 내렸다.<sup>85)</sup> 정미일(26일) 급사중 李巽을 潭州刺史·湖南觀察使로 삼았다.

윤12월 계유일(23일) 문하성이 상주하길 “郵驛의 條式에 의하면 [우역을 왕래할 때에는] 응당 紙券을 발급한다. 문하성을 제외하고 諸使·諸州는 [우역의] 往還에 필요한 [紙]券을 발급할 수 없으며, 도착하려던 州府에 이르면 이를 반납하고 별도로 [지권을] 발급하여 還朝하도록 해야 한다. 常參官의 외직 제수 및 分司·假寧의 [이유로] 왕래할 때에도 모두 지권을 발급해야 한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sup>86)</sup> 갑술일(24일) 牂柯·室韋·靺鞨이 모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渤海 文王 大興 56년/792년 윤12월)] 渤海押靺鞨使 楊吉福 등 35인이 조공하러 왔다.<sup>87)</sup>

[정월] 9년(793) 봄 정월 경진삭 조하를 마치고 황제가 ‘退朝觀仗歸營詩’를 지었다. 을유일(6일) 劍南東川節度使 王叔邕이 내조하였다. 계묘일(24일) 처음으로 茶에 세금을 부과하여 매년 전 40만 관을 얻었는데, 염

84) 『당회요』 권40, 君上愼恤, 정원 8년 11월 조, “敕, 比來所司斷罪, 拘守科條, 或至死刑, 猶先決杖. 處之極法, 更此傷殘, 惻隱之懷, 實所不忍. 自今已後 罪之死者, 先決杖宜停”(841쪽); 『당대조령집』 권82, 刑法, 「罪至死者勿決先杖勅」, “自今罪至死者, 勿決先杖”(474쪽).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川村康, 「建中三年重杖處死法考」, 池田溫 編, 『中國禮法と日本律令制』, 東方書店, 1992, 447쪽 등 참조.

85) 『전당문』 권54, 덕종황제5, 「水災賑恤勅」, 582~583쪽.

86) 관련 연구로는 荒川正晴, 「唐代公用交通システムの構造」(第4章), 『ユーラシアの交通・交易と唐帝國』, 名古屋大學出版社, 2010, 163~181쪽 등 참조.

87) 『당회요』 권96, 渤海, “貞元八年閏十二月, 渤海押靺鞨使楊吉福等三十五人來朝貢”(2042쪽). 한편 김종복은 앞의 갑술일 조에 보이는 말갈의 조공은 발해의 통제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하였다(김종복, 「발해 견당사(遣唐使)에 대한 기초적 검토」, 44~45쪽).

철사 장방이 상주한 바를 따른 것이다. 차에 징세한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갑진일(25일) 劍銅器의 매매를 금지시켰다. 천하의 구리 광산[銅山]은 임의로 사람들이 채취하여 官에서 그 구리를 매입하고 [銅鏡의 주조를 제외하고는 주조할 수 없게 하였다.<sup>88)</sup>

2월 경술일이 초하루이다. 이전에 재상들이 三節(즉 중화절·상사절·중양절)의 賜宴으로 인해 府縣에서 연회 준비[供帳]의 폐단을 겪으니 宴錢을 분급하여 諸司로 하여금 각기 정치 좋은 곳을 골라 연회를 즐기도록 청하여 이를 따랐다.<sup>89)</sup> 이날 중화절에 재상은 곡강정에서 연회를 즐겼고 諸司는 편의대로 하였는데, 이로부터 각기 연회를 즐겼다. [갑인일(5일)] 易定留守 張昇雲을 義武軍節度使로 삼았다.<sup>90)</sup> 신유일(12일) 조서를 내려 다시 鹽州城을 쌓게 하였다.<sup>91)</sup> 정원 3년(787) 염주성이 토번에 의해 무너지니 이로부터 해외에 성채와 보루[堡障]가 없어 犬戎이 침략하였다. 성을 완공한 뒤 변경의 우환이 종식되었다.<sup>92)</sup>

3월 기해일(21일) 駕部郎中·知制誥 張式을 虢州刺史에 임명하였다.

여름 4월 신유일(13일)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河中·關輔가 특히 심하여 성벽과 민가가 무너졌고 땅이 갈라지고 물이 용

88) 『자치통감』 권234, 정원 9년(793) 정월 조, “癸卯, 初稅茶. 凡州·縣產茶及茶山外要路, 皆估其直, 什稅一, 從鹽鐵使張滂之請也. 滂奏, ‘去歲水災減稅, 用度不足, 請稅茶以足之. 自明年以往, 稅茶之錢, 令所在別貯, 俟有水旱, 以代民田稅.’ 自是歲收茶稅錢四十萬緡, 未嘗以救水旱也. [호삼성 주: 榷茶之說, 始於趙贊, 至張滂而始], 滂又奏, ‘姦人銷錢為銅器以求贏, 請悉禁銅器. 銅山聽人開采, 無得私賣’”(7539~7540쪽). 아울러 『당회요』 권84, 雜稅, 1831쪽 참조.

89) 덕종 정원 4년(788) 9월 조에 보이는 조서 내용 참조.

90) 『자치통감』 권234, 정원 9년 2월 조, “甲寅, 以義武留後張昇雲為節度使”(7540쪽).

91) 『당대조명집』 권99, 政事·建易州縣, 「城鹽州詔」, 499~500쪽.

92) 『자치통감』 권234, 정원 9년 2월 조, “初, 鹽州既陷, 塞外無復保障, 吐蕃常阻絕靈武, 侵擾鄜坊. 辛酉, 詔發兵三萬五千人城鹽州, 又詔涇原·山南·劍南各發兵深入吐蕃以分其勢, 城之二旬而畢. 命鹽州節度使杜彥光戍之, 朔方都虞候楊朝晟戍木波堡, 由是靈·夏·河西獲安”(7540쪽).

솟음쳤다.

5월 경신일(?) 諸州府의 執刀를 폐하였다.<sup>93)</sup> 갑진일(27일) 義成軍節度使·檢校右僕射 賈耽을 左僕射·同中書門下平章事, 尚書左丞 盧邁를 本官·同平章事に 임명하였다.<sup>94)</sup> 鄭州刺史 李融을 滑州刺史·義成軍節度使로 삼았다. 을사일(28일) 韋臯가 군사를 西山으로 보내 토번의 峨和城·定廉城·通鶴軍을 격파하고 무릇 보루 50여 곳을 평정하였다고 상주하였다. 이날 토번으로부터 획득한 병장기를 바쳤다.<sup>95)</sup> 병술(오?)일(29일) 문하시랑·평장사 동진을 예부상서에 임명하고 知政事を 파직시켰다.<sup>96)</sup>

[6월] 갑인일(7일) 韋臯에게 검교우복야를 더하고 司農少卿 裴延齡을 호부시랑·판탁지에 임명하였다. 경신일(13일) 급사중 李衡을 호부시랑·諸道鹽鐵轉運使에 임명하였다.

가을 7월 을미일(19일) 칙서를 내려 현령은 4考를 기한으로 삼되, 교체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5考까지 하게 하였다. 경자일(24일) 信州刺史 孫公器를 邕管經略使로 삼았다. [숙종 지덕 연간(756~758)의] 故事에 의하면, 재상이 붓을 들어[秉筆] 일을 처리함에 매 사람이 열흘에 한 번씩 교대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賈耽·趙憬·陸贄·盧邁가 함께 정사를 심의·처리하였는데[同平章政事], 백료의 보고[關白]가 있으면 번

93) 『책부원구』 권484, 邦計部2, 經費, “福建觀察使·福州刺史王栩奏, “諸州並設軍額防虞役使, 更置執刀, 甚爲煩費. 既乖簡要, 又給資糧. 況臣本道頻遇水旱, 百姓艱乏, 職貢或闕. 臣自到官, 已詔停其管, 諸州並請停罷其資糧等. 望借臣充當管軍資所要, 待年豐, 人戶歸復, 即收送度支, 以裨國用.” 制曰, “可. 其資糧二年後, 令戶部准停減例收管. 諸州府執刀, 亦宜省罷. 其資糧委戶部徵收”(5490쪽).

94)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9년 5월 조, “義成軍節度使賈耽爲尚書右僕射, 尚書左丞盧邁, 同中書門下平章事”(198쪽).

95) 『자치통감』 권234, 정원 9년 5월 조, “韋臯遣大將董勳等將兵出西山, 破吐蕃之眾, 拔堡柵五十餘”(7547쪽).

96)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9년 5월 조, 198~199쪽.

갈아가며 서로 미룬 채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서를 내려 열흘마다 붓을 들게 하였는데, 이후 조서를 내려 매일 번갈아가며 붓을 들게 하였다.<sup>97)</sup> 劍南 西山羌의 女國王 湯立志, 哥鄰王 董臥庭, 白狗王 羅陀忽, 弱水王 董避和, 逋租王 弟鄧告知, 南水王 姪尚悉曩 등 6국의 君王이 스스로 와서 조공하였다. 6국은 이전에 토번에 붙었으나 韋臯가 서산으로 출정하여 토번을 토벌하자 이 때문에 六蠻이 내부하였던 것이다. 각기 관직[官秩]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sup>98)</sup>

8월 경술일(4일) 태위·중서령·西平郡王 李晟이 흥거하자 태사에 추증하고 5일간 조회를 폐하였다. 기사일(23일) 황태자의 장남 廣陵王 [李] 淳(즉 이후의 憲宗)이 妃 郭氏와 혼인하였다[納].

9월 기묘일(3일) 九日宴을 파하였는데 태사 이성의 상중이기 때문이다.

겨울 10월 기유일(3일) 시중 馬燧가 延英[殿]에서 [황제를] 면대[對]하였다. 마수는 발에 병이 있어 조서를 내려 배례하지 않게 하고 움직일 때에도 땅에 엎드리게 하였으며 환관에게 명하여 부축하게 하였다. 황제가 그에게 말하길 “전날에는 경이 태위 이성과 함께 왔는데 지금은 공 혼자 왔구려”라고 한 뒤, 이어서 한숨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마수가 물러가려 하자 황제가 섬돌까지 이르러 전송하였다. 계유일(27일) 環王國에서 코뿔소[犀牛]를 바치자 황제가 태묘에 보이게 하였다.

11월 을유일(10일) 동짓날 황제가 친히 圓丘에서 교사를 지냈다. 이날 궁으로 돌아와 단봉루에 거둥하여 제서를 내려 말하길,

97) 『당회요』 권53, 雜錄, “貞元九年七月, 詔宰相以旬秉筆決事. 初, 至德中, 宰相迭秉筆處斷, 每十日一易. 及賈耽·趙憬·陸贄·盧邁同平章政事, 百寮有司問白, 相讓不言, 於是奏議請旬秉筆者出應之. 其後, 又請每日更秉筆, 迭以應事”(1082쪽).

98) 『자치통감』 권234, 정월 9년 7월 조, 7548쪽.

짐이 부덕한 몸으로 삼가 황위에 올라 치도에 전력한 지 15년이 되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오직 공경하는 자세로 감히 안일하지 않았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삼가 힘쓰지 않음이 없었다. 皇靈이 돌보아주시고 宗社가 보우하시어 풍년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荒服이 회동하고 멀리까지 지극히 평안하여 中外가 모두 따랐다. 늘 커다란 복을 생각하니, 이는 진실로 하늘이 내린 경사였다. 이 때문에 삼가 禮章을 받들어 몸소 郊廟에 제향을 올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펼쳐 선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정성을 펼친다. 감사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하늘이 내리신 큰 복이 어찌 나 혼자에게 있겠는가! 만방과 더불어 그 혜택을 고루 나누려 하노라. 천하에 大赦를 내린다.

라고 하였다.<sup>99)</sup> 신묘일(16일) 華州潼關鎮國軍·隴右節度使 이원량이 良原(城)에서 졸하자, 그 部將 阿史那敝에게 이원량의 군대를 통솔하여 양원성을 지키게 하였다. 임인일(27일) 하남윤·동도유수 裴諝가 졸하였다. 갑진일(29일) 제서를 내려 冬薦官은 마땅히 尚書丞·郎이 都堂에서 理術을 묻고 아울러 時務狀을 시험하여 그 통달 여부 및 考課를 역임한 事迹을 살펴 세 등급으로 정하고 아울러 舉主의 姓名을 [적어 상주하게 하였다]. 아울러 御史 1인에게 監試하도록 하였다. 가령 관직 제수 이후의 정사 처리 여부를 御史臺·觀察使에게 聞[奏]하도록 하여 舉主를 殿最하게 하였다.<sup>100)</sup>

99) 『당대조령집』 권70, 典禮·南郊4, 「貞元九年南郊大赦天下」, “可大赦天下。自貞元九年十一月十日昧爽, 云云。其見於官司辨對者, 亦並放免。……”(390~391쪽);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9년 11월 조, “癸未(8일), 朝獻于太清宮。甲申(9일), 朝享于太廟。乙酉, 有事于南郊, 大赦”(199쪽).

100) 『진당문』 권52, 덕종황제3, 「考試冬薦官詔」, 569쪽, “冬薦官, 其令諸司尚書·左右丞·本司侍郎引於都堂, 訪以理術, 兼試時務狀, 考其通否及歷任考第事跡, 定為二等, 並舉主名姓錄奏, 仍令御史一人監試。如授官有課效尤著及犯贓不任者,

12월 병오삭 제서를 내려 말하길 “지금 이후로 使府의 判官·副使·行軍[司馬] 이하는 使가 파직한[使罷] 뒤 예컨대 檢校·試 5품 이상의 관인으로 마땅히 吏部選에 모이지[集] 않는 경우는 罷使의 郎官·御史의 예에 준하여 冬季에 聞奏하도록 하라”고 하였다.<sup>101)</sup> 병진일(11일) 宣武에서 軍亂이 일어나 절도사 劉士寧을 축출하였다. 임술일(17일) 通王 [李] 諶을 宣武軍節度使, 宣武軍節度副使 李萬榮을 汴州刺史·宣武軍節度·汴宋等州觀察留後로 삼았다.<sup>102)</sup> 朔方靈鹽節度副大使·太子少師·檢校左僕射·餘姚郡王 杜希全이 졸하였다.

[정원] 10년(794) 봄 정월은 을해일이 초하루이다. 을유일(11일) 度王 [李] 諒을 朔方靈鹽豐節度大使, 朔方等道行軍司馬 李燦을 留後에 임명하였다. 임진일(18일) 南詔의 異牟尋이 神川에서 토번을 대파하고 사신을 보내 승리를 알렸다[獻捷]. 기해일(25일) 昭義節度使·檢校司空·平章事 李抱眞이 관직을 낮추어주길[降官] 청하자 이에 검교좌복야에 제수하였다. 당시 이포진은 병이 들자 巫祝이 마땅히 爵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였던 것이다. [(발해 廢王 2년/794년 정월) 來朝한 王子 大清允을 右衛將軍同正으로 삼고 그 아래의 30여 인에게 차등을 두어 관직을 배수하였다].<sup>103)</sup>

仍委御史臺及觀察使聞奏, 以殿最舉使(主?)”(569쪽).

101) 『당회요』 권75, 選部下, “九年十二月制, ‘自今已後, 應諸色使行軍司馬·判官·書記·參謀·支使·推官等, 使罷者, 如是檢校試五品已上, 不合于吏部選集, 並任准罷使郎官·御史例, 冬季聞奏’”(1614쪽). 관련 연구로는 이영철, 『唐 德宗時期 冬薦의 施行과 藩鎮 幕職官』, 『중국고중세사연구』 25, 2011 참조.

102)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9년 12월 조, “丙辰, 宣武軍將李萬榮逐其節度使 劉士寧, 自稱留後”(199쪽); 『자치통감』 권234, 정원 9년 12월 조, 7549~7551쪽.

103) 『구당서』 권199하, 발해말갈전, “[貞元]十年正月, 以來朝王子 大清允爲右衛將軍同正, 其下三十餘人, 拜官有差”(5362쪽). 이 기사는 『책부원구』 권976, 外臣部 21, 褒異3, 정원 10년 2월 임술일(19일) 조에서도 확인되는데(11295쪽), 정월과

2월 병오일(3일) 瀛州刺史 劉滂을 秦州刺史·隴右經略軍使로 삼고 普潤縣에 치소를 두었으며 아울러 普潤軍을 명호로 하였다.<sup>104)</sup> 을묘일(12일) 급사중 齊抗을 하남윤에 임명하였다. 을축일(22일) 義成軍節度使·鄭滑觀察使 李融이 졸하였다. 정묘일(24일) 조서를 내려 말하길 “군신 사이는 義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매번 흥거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슬픔이 더욱 사무친다. 마땅히 文武朝臣이 薨卒하면 그 月俸·料는 마땅히 전부 지급하고 아울러 本官의 한 달 俸·料에 준하여 賻贈을 하게 하라”<sup>105)</sup>라고 하였다.

3월 을해일(2일) 누런 안개가 사방을 뒤덮어 햇빛이 사라졌다. 華州刺史 李復을 滑州刺史·義成軍節度使로 삼았다.<sup>106)</sup> 滄州의 程懷直이 내조하자 安業坊의 저택과 기녀 1인을 사여하고 다시 번진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경진일(7일) 남조의 이모심이 토번의 鐵橋 이동의 성루 16곳을 공격하여 수복하면서 그 왕 5명을 사로잡고 그 백성 10만 구를 항복시켰다.<sup>107)</sup> 임신일(?) 同州刺史 盧徵을 華州刺史·潼關防禦·鎮國軍等使에

---

2월이라는 시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청윤 등이 하정의 목적으로 입조한 것이 정월이고 당조가 그들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귀국 연회를 베푼 것이 2월이라고 이해된다(김종복, 『발해 건당사(遣唐使)에 대한 기초적 검토』, 45~46쪽).

104) 『자치통감』 권234, 정원 10년(794) 2월 조, “瀛州刺史劉滂為兄濟所逼, 請西扞隴坻, 遂將部兵千五百人·男女萬餘口詣京師, 號令嚴整, 在道無一人敢取人雞犬者. 上嘉之, 二月, 丙午, 以為秦州刺史·隴右經略軍使, 理普潤. [호삼성 주: 理, 治也. 以普潤為治所], 軍中不擊柝, 不設音樂. 士卒病者, 滂親視之, 死者哭之”(7553쪽).

105) 『당대조령집』 권101, 政事·官制下, 『朝臣薨卒給俸料賻贈詔』, 514쪽. 『당회요』 권91, 內外官料錢上, “十年二月詔, ‘應文武朝官有薨卒者, …… 以為賻贈. 若諸司三品已上官, 及尚書省四品官, 仍令有司舉舊令聞奏, 行弔祭之禮, 務從優備.’ 初, 左庶子雷咸以是月朔卒, 有司以故事計其月俸, 以月數給之. 上聞之, 故有是命”(1973쪽).

106) 『자치통감』 권234, 정원 10년 2월 조, “乙丑(22일), 義成節度使李融薨. 丁卯(24일), 以華州刺史李復為義成節度使”(7553쪽).

임명하였다. 신축일(28일) 延州刺史 李如暹이 거느린 蕃落에게 安塞軍이라는 명호를 내리고 [李]如暹을 軍使로 삼았다.

여름 4월 무진(신?)일(6일) 지진이 일어났고 계축일(11일) 다시 지진이 일어났다.<sup>108)</sup> 恆州에서 거인의 족적을 발견하였다고 상주하였다. 雲南告捷使 高細龍을 左武衛將軍에 임명하였다. 이달 太伯[星]이 낮에 출현하였다. 큰 새들이 궁중으로 날아들어 와서 雜骨을 먹었다.<sup>109)</sup>

이해 봄 장마[霖雨]로 맑은 날이 드물었다.

6월 임인삭 昭義軍節度使·檢校左僕射·同中書門下平章事·義陽王 이포진이 졸하니, 조서를 내려 그 장수 王延貴를 權知昭義軍事에 임명하였다.<sup>110)</sup> 계축일(2일) 祠部郎中 袁滋를 겸어사중승으로 삼아 冊南詔使에 임명하였다. 갑인일(13일) 辰州刺史 房孺를 다시 容管經略使로 삼았다. 병인일(25일) 韋臯가 西山의 峨和城에서 토번의 성책을 격파하고 2,800급을 참수하였다고 상주하였다. 경오일(29일) 度支使 裴延齡을 兼靈·鹽等州鹽池井榷使에 임명하였다. 신미일(30일) 그믐에 물새가 左藏庫에 모여 드니, 이날 밤 폭우가 내리고 폭풍이 불어 나무가 꺾였다.<sup>111)</sup>

가을 7월 임신삭 용왕 이원을 소의군절도사에 임명하고 昭義軍押衙

107) 『자치통감』 권234, 정원 10년 정월 조, 7551~7553쪽.

108)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0년 4월 조, 199쪽.

109) 『구당서』 권37, 오행지, “十年四月, 有大鳥飛集宮中, 食雜骨數日, 獲之, 不食而死”(1369쪽).

110) 『자치통감』 권235, 정원 10년 6월 조, “壬寅朔, 昭義節度使李抱真薨. 其子殿中侍御史緘與抱真從甥元仲經謀, 祕不發喪, 詐為抱真表, 求以職事授緘. …… 昭義步軍都虞候王延貴, 汝州梁人也, 素以義勇聞. 上知抱真已薨, 遣中使第五守進往觀變, 且以軍事委王延貴. …… 守進召延貴, 宣口詔令視事, [호삼성 주: 口宣所受詔旨, 故曰口詔], 趨緘赴東都. 元仲經出走, 延貴悉歸罪於仲經, 捕斬之. 詔以延貴權知昭義軍事”(7560~7561쪽).

111)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0년 6월 조, “自春不雨至于月. 辛未, 雨, 大風拔木”(199쪽).

王延貴를 潞府左司馬·充昭義節度留後로 삼으며 ‘虔休’라는 이름을 내렸다. 이포진의 別將인 權知洺州事 元誼는 왕건휴가 유후에 임명된 것에 불만을 품고 명주를 근거로 叛하여 은밀히 田緒와 결탁하였다.<sup>112)</sup> 경진일(9일) 남조의 이모심에게 金印銀窠를 내렸는데, 그 글자는 ‘貞元册南詔印’이라 하였다. 이에 앞서 토번이 金印을 남조에게 주었는데, 韋臯가 그 舊[例]에 의거하여 이를 청하였던 것이다.<sup>113)</sup> 汴州에서 군란이 일어나 절도유후 이만영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潰산하였다. 이만영이 그 처자를 모두 잡아 참하였다. 기해일(28일) 前번주절도사 유사녕을 마땅히 郴州에 안치하였다. 欽州에서 守鎮하던 黃少卿이 叛하여 邕管經略使 孫公器를 공격하고 또 欽·橫·潯·貴州 등을 함락시켰다.<sup>114)</sup> 토번의 大將 論乞髯·陽沒藏·悉諾碣이 그 일가를 이끌고 내부하자 歸義將軍에 제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4품 이하의 무관을 설치하여 歸附한 四夷에게 제수하고 아울러 懷化大將軍 이하의 俸錢을 제정하였다.

9월 신미삭 袁州刺史 董鎮을 邕管經略使로 삼았다. 무자일(18일) 백료에게 九日宴을 내리고 황제가 시를 지어 하사하였다. 신묘일(21일) 남조에서 鐔槩, 浪人劍, 吐蕃印8紐를 바쳤다. 무술일(28일) 定州의 張昇雲이 ‘茂昭’로 개명하였다.

겨울 10월 계묘일(3일) 선정전에 거동하여 賢良方正·能直言極諫 등의 擧人을 시험하였다. 임술일(22일) 형부상서 劉滋가 졸하였다.

11월 을유일(16일) 諸道鹽鐵轉運使 張滂을 衛尉卿, 浙西觀察使 王緯를 諸道鹽鐵轉運使에 임명하였다. 경인일(21일) 秘書監으로 致仕한 穆

112) 『자치통감』 권235, 정원 10년 7월 조, 7562쪽.

113) 『자치통감』 권235, 정원 10년 6월 조, “雲南王異牟尋遣其弟湊羅棟棟, 獻地圖·土貢及吐蕃所給金印, 請復號南詔. 癸丑(2일), 以祠部郎中袁滋為册南詔使, 賜銀窠金印, 文曰‘貞元册南詔印’”(7561쪽).

114)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0년 8월 조, “陷欽·橫·潯·貴四州”(199쪽).

寧<sup>115</sup>)이 졸하였다.

12월 경자일이 초하루이다. 임술일(23일) 중서시랑·평장사 육지를 태자빈객으로 좌천시켰다.

[정원] 11년(795) 봄 정월 경오일이 초하루이다. 을해일 嶺南節度使 薛珏<sup>116</sup>)이 졸하였다. 을미일 秘書少監 王礎를 黔中經略觀察使로 삼고, 衛尉少卿 武少儀를 邕管經略使로 삼았다. 병신일 邕管經略使 王鏐를 廣州刺史·영남절도사로 삼았다.

2월 계묘일 衢州刺史 李若初를 福建觀察使로 삼았다. 을사일 渤海 大欽茂의 아들 [大]嵩을 渤海郡王·忽汗州都督으로 책립하였다.<sup>117</sup>) 을묘일 涇州 彰信堡에 潘原縣<sup>118</sup>)을 설치하였다. 갑자일 九姓迴紇의 骨咄祿伽奉誠可汗이 졸하였다.<sup>119</sup>)

3월 경오일 司徒·兼侍中 馬燧가 질병으로 시중을 그만두길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신미일 宰臣과 兩省의 供奉官에게 曲江亭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을축일 이부시랑 鄭瑜를 河南·淮南水陸轉運使로 삼았다. 병신일 諸州에서 例<sup>120</sup>)에 의거하여 재야 은거자[隱居丘園]로 이름이 알

115) 정병준, 『舊唐書』·『新唐書』 穆寧傳 譯註, 『동국사학』 55, 2013 참조.

116) 『구당서』 권185하, 良吏下, 薛珏傳, 4827~4828쪽; 『신당서』 권143, 薛珏傳, 4688~4689쪽.

117) 대흥무 아들의 이름은 大嵩鄰 혹은 大嵩璘으로 기록된 것도 있다.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1년 2월 조, “册拜嵩鄰爲忽汗州都督·勃海王. [考異: 實錄, ‘乙巳, 册大嶺嵩鄰爲勃海郡王.’ 今從新傳]”(7566쪽); 『구당서』 권199하, 北狄, 渤海靺鞨傳, “遣內常侍殷志瞻册大嵩璘……”(5362쪽); 『책부원구』 권96, 외신부 10, 册封3, 11352쪽.

118) 『신당서』 권37, 지리지1, 關內道, 涇州·保定郡 조, 968쪽.

119) 『册府元龜』 권976, 외신부21, 褒異3, 정원 11년 2월 조, “甲子, 以九姓迴鶻吐祿毗伽奉誠可汗卒, 廢朝三日, 仍令文武三品已上官, 就鴻臚弔其使者”(中華書局, 11462쪽);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1년 4월 조, “回鶻奉誠可汗卒, 無子, 國人立其相骨咄祿爲可汗. 骨咄祿本姓陝跌氏……”(7568쪽).

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蔡廣成 등 9인을 추천하자 각자 試官을 제수하고 公乘을 지급하여 京[京]에 이르는 날 재능을 헤아려 敍用하게 하였다.

여름 4월 가뭄이 들었다. 임술일 太子賓客 陸贄를 忠州別駕,<sup>121)</sup> 京兆尹 李充을 信州長史, 衛尉卿 張滂을 汀州長史로 좌천시켰다.<sup>122)</sup> 계해일 병부시랑 韓臯를 경조윤으로 삼았다. 갑자일 南詔에 敕書를 내릴 때 처음으로 中書省 3官을 배열시켜 奉·宣·行하게 하고 舊制를 회복시켰다.<sup>123)</sup> 병인일 幽州 劉濟가 奚王 啜刺 등 6만 여 무리를 대파하였다고 상주하였다.<sup>124)</sup>

120) 『책부원구』 권645, 貢舉部7, 科目, 11년 3월 조, “諸州准制薦 ……”(7732쪽).

121) 『구당서』 권139, 陸贄傳, “十一年春, 旱, 邊軍芻粟不給, 具事論訴, 延齡言贄與張滂·李充等搖動軍情, 語在延齡傳, 德宗怒, 將誅贄等四人, 會諫議大夫陽城等極言論奏, 乃貶贄爲忠州別駕”(3817쪽).

122) 정원 11년 2월 육지가 재상에서 파직되자 裴延齡이 이충·장방 등을 육지의 무리라고 참소하였고, 4월 이들의 관직을 좌천시켰다(『자치통감』 권235, 정원 11년 2월·4월 조, 7566쪽).

123) 『구당서』 권197, 南蠻, 南詔蠻傳, “遣清平官尹輔曾隨袁滋來朝, 又得先沒蕃將衛景昇·韓演等, 并南詔所獲吐蕃將帥俘馘百人至京師, 湊羅棟歸國, 在道而卒, 贈右散騎常侍, 授尹輔曾檢校太子詹事兼御史中丞, 餘亦差次授官, 又降敕書賜異牟尋及子閣勸, 清平官鄭回·尹仇寬等各一書, 書左列中書三官宣奉行, 復舊制也”(5283~5284쪽); 『책부원구』 권976, 外任部21, 褒異3, 4월 조, 11462쪽. 王言의 하나인 論事勅書는 특정 사안에 대해 公卿을 위로·인도하거나 신하를 경계·약속할 때, 혹은 신하가 상표한 것에 대한 황제의 回答(批答)을 내릴 때 사용되었다. 논사칙서에 대하여 廣瀨憲雄은 황제가 ‘국내외’의 신하 개인 또는 소수자에게 보낸 사적 문서라는 점에서 중국왕조가 군신관계라고 간주하는 주변 국가에 대해 발급한 외교문서이자 중국왕조가 설정한 국제질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廣瀨憲雄, 『第四章 慰勞詔書·論事勅書の形式とその継受一末尾の定型句を中心に一』,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11, 109쪽 참조). 또한 논사칙서에 대해서는 『唐令拾遺補』, 公式令21, 補四(唐)論事勅書式 조, 東京大學出版會, 1997, 731~732쪽 참조.

124) 『자치통감』 권235, 정원 11년 4월 조, 7568쪽;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1년 4월 조, “丙寅, 奚寇平州, 劉濟敗之于青都山”(199쪽). 이하 『신당서』 덕종본기의 기사는 정병준, 『新唐書』 권7, 德宗本紀 역주, 『동국사학』 52, 2012, 431~

5월 정묘일이 초하루이다. 경오일 유사에게 명하여 죄수를 검열하였는데[慮囚],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sup>125)</sup> 정축일 宣武留後 李萬榮을 汴州刺史·宣武節度副使·知節度事로 삼았다. 昭義軍節度留後 王虔休를 潞州大都督府長史·昭義軍節度副使·知節度事·管内度支營田·潞澤磁邢洺觀察使로 삼았다. 또 朔方留後 李燮을 靈州大都督府長史·朔方靈鹽豐夏四州受降定遠城天德軍節度副使·知節度事·管内度支營田觀察押蕃落等使로 삼았다. 갑신일 河東節度使·檢校工部尙書·太原尹 李自良이 졸하였다. 경인일 사자를 보내 九姓迴紇의 [骨咄祿을] 騰里羅羽錄沒密施合胡六骨咄祿毘伽懷信可汗에 책립하였다.<sup>126)</sup> 계사일 通王 [李]諶을 河東節度使로 삼고, 河東行軍司馬 李悅을 河東節度營田觀察留後·北都副留守로 삼았다. 갑오일 처음으로 河東監軍의 도장[印]을 주조[鑄]하였다. 갑군이 도장을 가진 것은 王定遠부터 시작되었다.<sup>127)</sup>

6월 河陽에서 白鳥를 바쳤다. 갑진일 晉慈隰觀察使 崔漢衡이 졸하였다. 계축일 絳州刺史 姚齊梧를 晉慈隰都防禦觀察使로 삼았다.

가을 7월 병인일 초하루에 右諫議大夫 陽城을 國子司業으로 삼았다.<sup>128)</sup> 河東監軍 왕정원을 崖州로 配流하였는데, 멋대로 살인한 죄에 저

471쪽 참조.

125)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1년 5월 조, “庚午, 中書門下慮囚”(199쪽). 또한 정병준, 『新唐書』 권7, 德宗本紀 역주, 464쪽의 각주 234 참조.

126)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1년 5월 조, “遣祕書監張薦册拜回鶻可汗骨咄祿爲……”(7568쪽); 『구당서』 권149, 張薦傳, “延齡排擯不已, 會差使册迴紇毘伽懷信可汗及弔祭, 乃命薦兼御史中丞, 入迴紇”(4024쪽); 『구당서』 권195, 迴紇傳, 5210쪽. 한편 『당회요』에서는 정원 10년 4월로 기록되어 있다(권98, 迴紇, 2072쪽).

127)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1년 5월 조, 7569쪽.

128)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1년 7월 조, 7569쪽; 『구당서』 권192, 隱逸, 陽城傳, “時朝夕欲相延齡, 城曰, ‘脫以延齡爲相, 城當取白麻壞之.’ 竟坐延齡事改國子司業”(5133쪽).

축된 것이다.<sup>129)</sup> 신묘일 江西觀察使·洪州刺史 齊映이 졸하였다.

8월 신해일 司徒·兼侍中·北平郡王 마수가 흥거하였고, 太傅로 추증하였다. 병진일 楚州刺史 路寰을 洪州刺史·江西觀察使로 삼았다.

윤[8]월 기축일 國子司業 裴澄이 표문을 올려 『乘輿月令』 12권, 『禮典』 12권을 바쳤다.

9월 기묘일 宰臣과 兩省供奉官에게 曲江에서 연회를 베풀고 6韻으로 된 시를 지어 하사하였다. 정사일 韋臯에게 統押近界諸蠻及西山八國·雲南安撫等使를 더해주었다.<sup>130)</sup> 滄州大將 程懷信이 그 [節]帥 程懷直를 축출하였다.<sup>131)</sup>

겨울 10월 정축일 虔王 [李]諒을 橫海軍節度大使로 삼고, 兵馬使 正희신을 留後로 삼았다.<sup>132)</sup>

11월 병신일 하지에 朝賀를 받지 않았는데, 사도 마수의 장례 때문이다. 신축일 태상사에서 마수의 시호를 ‘景武’로 정하였는데, 황제가 말하길 “景은 太祖의 시호이니 莊武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sup>133)</sup> 기유일 潭州에서 붉은 새[赤鳥]를 바쳤다.

12월 무진일 황제가 苑中에서 사냥하였는데<sup>134)</sup> 많이 죽이는 것을 경

129)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1년 7월 조, 7569쪽 참조.

130) 『구당서』 권140, 韋臯傳, 3823쪽; 『자치통감』 권234, 정원 10년 정월 조, “劍南·西山羌·蠻二萬餘戶來降, 詔加韋臯押近界羌·蠻及西山八國使, [호삼성 주: 八國, 即前女王·哥鄰等. 弱水最弱小, 不得預八國數]”(7551~7552쪽). 한편 『당회요』에서는 정원 10년 8월로 기록되어 있다(권99, 東女國, 2098쪽).

131)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1년 9월 조, “橫海節度使程懷直, 不恤士卒, 獵於野, 數日不歸. 懷直從父兄懷信爲兵馬使, 因衆心之怨, 閉門拒之, 懷直奔歸京師”(7570쪽).

132)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1년 10월 조, 7570쪽. 한편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1년 9월 조, “……自稱留後”(200쪽) 참조.

133) 『당회요』 권80, 諡法下, 雜錄, 정원 11년 조, 1761쪽; 『책부원구』 권595, 掌禮部 33, 諡法1, 馬燧 조, 7137쪽.

134)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1년 12월 조, 200쪽.

계하여 단지 三驅의 禮<sup>135)</sup>를 행하는 데 그치고 병사들을 위로하고 돌아왔다.

[정월] 12년(796) 봄 정월 갑오일이 초하루이다. 경자일 元誼·李文通이 洺州의 병사 5천과 民 5만 家를 이끌고 동쪽으로 田緒에게 달아났다.<sup>136)</sup> 임자일 前滄州節度使 程懷直을 左龍武統軍으로 삼았다. 을축일 成德軍節度使·檢校司徒·兼侍中 渾瑊을 兼中書令으로 삼고<sup>137)</sup> 興元節度使 嚴震, 魏博의 田緒, 西川의 韋臯에게 모두 檢校左右僕射·同中書門下平章事를 더해주었다. 이에 方鎮이 모두 敍進되어 官을 兼하였다.<sup>138)</sup> 황제가 『貞元廣利藥方』 586首를 지어 천하에 반포하였다.

3월 계사일이 초하루이다. 갑오일 韋臯가 상주하여 降蠻 7천 戶를 거두고 토번이 내린 金字告身 55片을 얻었다고 하였다.<sup>139)</sup> 을사일 호부시랑 裴延齡을 호부상서로 삼았다. [병진일 韶王 暉이 흥거하였다].<sup>140)</sup> 무신일 병부상서 董晉을 充東都留守·判東都尙書省·東畿汝州都防禦使로 삼았다.

4월 임술일이 초하루이다. 무진일 左右十軍使가 상주하여 “지난 해

135) 三驅의 예는 사냥할 때 세 면은 막고 한 면은 열어두어 달아날 길을 남겨두는 것이다(『易』 比卦 참조).

136) 『자치통감』 권235, 정월 12년 정월 조, “元誼·石定蕃等帥洺州兵五千人及其家人萬餘口奔魏州, 上釋不問, 命田緒安撫之”(7570쪽).

137) 『자치통감』 권235, 정월 12년 정월 조, “乙丑, 以渾瑊·王武俊並兼中書令”(7570쪽).

138) 『자치통감』 권235, 정월 12년 정월 조, “己巳, 加嚴震·田緒·劉濟·韋臯並同平章事, 天下節度·觀察使, 悉加檢校官以悅其意”(7570쪽).

139) 『구당서』 권197, 남만, 남조만진, “韋臯於雅州會野路招收得投降蠻首領高萬唐等六十九人, 戶約七千, 兼萬唐等先受吐蕃金字告身五十片”(5284쪽); 『자치통감』 권235, 정월 12년 3월 조, “韋臯奏降西南蠻高萬唐等二萬餘口”(7570쪽).

140)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월 12년 3월 조, 200쪽.

겨울에 車駕가 諸營으로 행차하였는데, 銀臺亭子門 밖에 비석을 세워 聖迹을 기록[紀]하고자 한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sup>141)</sup> 경오일 魏博節度使·度支營田觀察使·檢校左僕射·平章事·魏州長史·駙馬都尉·鴈門郡王 田緒가 졸하였다.<sup>142)</sup> 경진일 황제의 탄신일에 沙門·道士, 이에 더해 文儒官에게 三教(즉 儒, 佛, 道)를 토론하게 하였고 황제가 크게 기뻐하였다.<sup>143)</sup>

5월 신묘일이 초하루이다. 병신일 邠寧節度使 張獻甫가 졸하였다. 갑진일 邠寧都虞候 楊朝晟을 邠州刺史·邠寧慶節度使로 삼았다. 銀夏節度使 韓潭이 제수받은 예부상서를 사양하며 崔寧의 [누명을] 씻어주길 청하니 그 집안사람이 거두어 장례지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정사일 駙馬 郭曖·王士平·곽애의 동생 [郭]煦와 [郭]暄이 대종의 기일[忌辰]에 연회를 즐긴 죄에 저촉되어 좌천당해 집으로 돌아갔다.

6월 임술일 故驩州司戶 竇參을 그 집안에서 거두어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을축일 처음으로 左右護軍中尉監·中護軍監을 설치하여 宦官에게 제수하였다. 左右神策軍使 竇文場과 霍僊鳴을 左右神策護軍中尉監로 삼고, 左右神威軍使 張尙進과 焦希望을 左右神威中護軍監으로 삼았다.<sup>144)</sup> 신사일 宣歙觀察使·宣州刺史 劉贊이 졸하였다.

141) 『당회요』 권27, 行幸, 정원 12년 4월 조, “……其碑立于亭子門外, 高二丈二尺”(608쪽).

142) 『신당서』 권7, 덕종본기, 12년 4월 조, “……其子季安自稱留後”(200쪽). 또한 『자치통감』 권235, 정원 12년 4월 조, 7571쪽.

143)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2년 4월 조, “上生日, 故事, 命沙門·道士講論於麟德殿, 至是, 始命以儒士參之. 四門博士韋渠牟嘲諷辯給, 上悅之, 旬月, 遷右補闕, 始有寵”(7571쪽).

144) 이때부터 신책군의 통솔권은 완전히 환관에게로 옮겨졌다. 이러한 덕종의 환관에 대한 입장 변화는 향후 정치무대에서 환관이 중심적 역할을 맡게 하고, 환관의 권력 장악을 초래하였다(임사영 저, 류준형 역, 『황제들의 당제국사』, 2016, 240~241쪽).

7월 을미일 東都留守·兵部尙書 董晉을 檢校左僕射·同中書門下平章事·汴州刺史·宣武軍節度使·宋毫穎觀察使로 삼았다. 당시에 李萬榮이 병에 걸리자 이만영의 아들 [李]迺가 스스로를 兵馬使에 서임[署]하였는데, 군인들이 또 이내를 내쫓아 변주에 난이 일어났으므로 동진에게 명하여 통수하게 한 것이다. 太子賓客 王翹을 東都留守·判東都尙書省事·東畿汝都防禦使로 삼았다. 이날에 변주절도사 이만영이 졸하였다. <sup>145)</sup> [무술일 韓王 迺이 흥거하였다]. <sup>146)</sup>

8월 신미일이 초하루이다. 일식이 있었다. <sup>147)</sup> 기사일 前魏博節度副使 田季安을 魏州長史·魏博節度觀察等使로 삼았다. 경오일 望仙門을 증수하고 夾城·十王宅·六王宅을 확장하였다. 계유일 虢州刺史 崔衍을 宣歙池觀察使로 삼고, 乞髯의 아들 湯忠義을 歸德將軍으로 삼았다. 병자일 汝州刺史 陸長源을 宣武行軍司馬로 삼았다. 병술일 文하시랑·평장사 趙憬이 흥거하였다. <sup>148)</sup>

9월 갑오일 河東行軍司馬 李景略을 豐州刺史·天德軍豐州西受降城都防禦使로 삼았다. 병오일 戶部尙書·判度支 裴延齡이 졸하였다. 경술일 魚藻宮에 행차하여 그 날 궁[內]으로 돌아왔다. 임자일 토변이 慶州를 침략하였다. <sup>149)</sup>

겨울 10월 임술일 조서를 내려 京畿에 가뭄이 들었으므로 租稅를 면

145)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2년 6월 및 7월 조, 7572~7573쪽 참조. 『신당서』 덕종본기에서는 6월 기축일에 이만영이 졸하자 아들 이내가 스스로 병마사를 칭하였다가 주살되었다고 전한다(정병준, 『新唐書』 권7, 德宗本紀 역주, 465쪽). 한편, 『자치통감』에 의하면 이만영의 사망 시점은 7월 병신일이다.

146) 『신당서』 권7, 덕종본기, 12년 7월 조, 200쪽.

147) 『신당서』 권7, 덕종본기, 12년 8월 조에서는 기미일이 초하루이고, 이 날에 일식이 있었다고 한다(200쪽).

148) 『신당서』 권7, 덕종본기, 12년 8월 조, 200쪽.

149) 『신당서』 권7, 덕종본기, 12년 9월 조, 200쪽; 『자치통감』 권235, 정원 12년 9월 조, 7575쪽.

제[放]하였다. 갑술일 諫議大夫 崔損과 給事中 趙宗儒를 모두 同中書門下平章事로 삼고<sup>150)</sup> 모두에게 金紫를 하사하였다. 少府監 崔穆을 晉州刺史·晉慈隰觀察使로 삼았다.

11월 신묘일 昭義 王虔休가 誕聖樂曲을 지어 바쳤다.

12월 기미일 큰 눈이 내려 평지에 2척[이나 쌓였고] 竹柏 나무가 많이 죽었다. 環王國이 바친 犀牛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아꼈는데, 이 겨울에 역시 죽었다. 황제가 刑政箴 1首를 지었다.<sup>151)</sup> 기미일 迴紇, 南詔, 劍南 西山國의 女國王이 모두 와서 朝賀하였다.

[정월] 13년(797) 봄 정월 무자일이 초하루이다. 경인일 太子少師로 致仕한 關播가 졸하였다. 임인일 토번의 贊普가 사자를 보내 우호를 요청하자[修好]<sup>152)</sup> 塞上에서 보고하였는데 황제는 犬戎이 맹약을 어겼다고 하여 그 사자를 받지 않았다.<sup>153)</sup> 東都 尚書省에 불이 났다.

2월 정사일 宰臣과 兩省供奉官에게 曲江亭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을해일 度支郎中 蘇弁을 戶部侍郎·判度支로 삼고, 병부랑중 王紹를 判戶部로 삼았다.

3월 무자일 麟德殿 앞에 會慶亭을 축조하였다. 을사일 福建都團練使

150) 『신당서』 권7, 덕종본기, 12년 10월 조, 200쪽.

151) 『진당문』 권55, 德宗6, 刑政箴并序 조, “朕以南面, 屬精理道, 雖及和平之濟, 未臻元古之風, 夙夜孜孜, 勤求不怠, 夫安人以正, 輔政以刑, 蓋爲之立中, 非使人從欲也. 是以務兼聽以酌群情, 擇庶官以資共理, 恒勉不足, 而過其過, 我欲仁矣, 尙逮夫意哉. 然萬務是殷, 必戒其失, 聽政之暇, 常志所存, 聊綴斯文, 庶乎自儆爾. 大樸既散, 利欲是生, 惟辟禦時, 建極作程, 導以仁政, 齊以典刑, 惠此下人, 致之和平. 立政伊何? 必循道德. 詳刑伊何? 必去煩刻. 不以人從欲, 不以枉傷直, 故百度惟貞, 萬物作式……”(591쪽).

152) 『자치통감』 권235, 정월 13년 정월 조, “吐蕃遣使請和親, 上以吐蕃數負約, 不許”(7576쪽);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월 13년 정월 조, 200쪽.

153)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월 13년 정월 조, 7576쪽.

李若初를 明州刺史·浙東觀察使로 삼고, 婺州刺史 柳冕을 福建觀察使로 삼았다.

여름 4월 [신유일 가뭄이 들어 慮囚하였다].<sup>154)</sup> 임술일 황제가 興慶 [宮]의 龍堂에 행차하여 기우제를 지냈다.<sup>155)</sup> 을축일 큰 눈이 내렸다. 경오일 義成軍節度使·鄭滑觀察營田·檢校左僕射·滑州刺史 李復이 졸하였다. 기묘일 大理卿 于頔를 陝州長史·陝虢觀察使로 삼았다. 경진일 陝虢都防禦觀察轉運等使 姚南仲을 滑州刺史·義成軍節度·鄭滑觀察使로 삼았다.

5월 병술일 초하루 韋臯가 嶺州를 수복하고 지도를 그려 바쳤다.<sup>156)</sup> 임자일 庫部郎中·翰林學士 鄭餘慶을 工部侍郎·知吏部選事로 삼았다. [경술일 의녕군 義寧軍에서 난이 일어나 그 장수 常楚客을 살해하였다].<sup>157)</sup>

6월 기묘일 초하루에 衡州刺史 陳雲을 邕管經略使로 삼았다. 신사일 龍首渠의 물을 끌어다 通化門에서부터 유입시켜 太清宮 앞으로 이르게 하였다. 임오일 韋臯가 상주하여 嶺州에서 토번을 격파하고 大籠官 7인을 생포하고 말과 가축, 기물과 병장기를 셀 수 없이 [얻었다고] 하였다.

가을 7월 병술일 宰相 盧邁가 여러 달 동안 휴가[告]를 요청하고 네

154)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3년 4월 조, 201쪽. 정병준, 『新唐書』 권7, 德宗本紀 역주, 465쪽 및 각주 240 참조.

155)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3년 4월 조, 201쪽. 정병준, 『新唐書』 권7, 德宗本紀 역주, 456쪽 각주 240 참조.

156) 『구당서』 권196하, 吐蕃傳下, “五月十七日, 吐蕃於劍南山·馬嶺三處開路, 分軍下營, 僅經一月, 進軍逼臺登城. 嶺州刺史曹高任率領諸軍將士并東蠻子弟合勢接戰, 自朝至午, 大破之, 生擒大籠官七人, 陣上殺獲三百人, 餘被刀箭者不可勝紀, 收獲馬畜五百餘頭匹·器械二千餘事”(5258~5259쪽); 『신당서』 권216하, 토번전하, 6099쪽;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3년 6월 조, 7577쪽; 『책부원구』 권987, 외신부30, 征討6, 정원 13년 5월 조, 11589쪽.

157)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3년 5월 조, 201쪽.

차례 표문을 올려 재상의 지위를 그만두겠다고 하였는데, 이 날 宰臣에게 명하여 노매의 사가(私第)로 병문안을 하게 하였다. 기축일 右神策中尉 霍僊鳴이 병드니 말 10필을 하사하였고 諸寺에서 승려에게 재회(齋)를 베풀게 하였다. 임진일 湖渠와 魚藻池를 준설하였는데, 깊이가 5척이었다. 을미일 지진이 일어났다.<sup>158)</sup> 갑진일 兵部郎中·判戶部 王紹를 호부시랑으로 삼았다. 을축일 조서를 내려 지금 이후로 嗣王의 薨葬에는 所司에서 모두 鹵簿를 제공하게 하고, 영구히 常式으로 삼았다.<sup>159)</sup>

8월 정사일 京兆尹 韓臯에게 조서를 내려 昆明池의 石炭·賀蘭 두塚과 아울러 湖渠를 정비하게 하였다. 임오일 容管經略使 房孺復이 졸하였다.

9월 기축일 노매가 재상의 지위를 간절히 사양하니<sup>160)</sup> 이에 太子賓客에 제수하였다. 신묘일 9일에 宰臣과 百官에게 曲江에서 연회를 베풀고 황제가 시를 지어 하사하였다. 기미일 江西觀察使 路寰이 졸하였다. 갑진일 定州<sup>161)</sup>를 大都督府로 높였다. 湖南觀察使 李巽을 江州刺史·江西觀察使로 삼고, 예부시랑 呂渭를 潭州刺史·湖南觀察使로 삼았다.

겨울 10월 계축일 초하루에 이전 滁州刺史 房濟를 容管經略使로 삼았다. 병진일 黔中觀察使가 상주하여 “溪州의 人戶가 호소(訴)하길, 이전 [계주]자사 魏從琚가 兩稅 이외에 매년 추가로 朱砂 1천 觔과 水銀 200馱를 진상함에 따라 戶民이 고통을 받으니 그만두게 하길 청하였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 淮西 吳少誠이 멋대로 淘刁河·汝河를 뚫으므로 조서

158)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3년 7월 조, 201쪽.

159) 『책부원구』 권60, 제왕부60, 立制度1, 덕종 정원 13년 7월 조, “宗正卿·嗣吳王獻奏, ‘簡王府諮議參軍嗣寧王子淑葬, 請鹵簿.’ 宰臣等議, 以子淑官卑, 不合給, 特詔令給. 因下詔, 自今已後, ……”(674쪽). 또한 『全唐文』 권5, 德宗皇帝, 嗣王葬用鹵簿敕 조, 10423쪽; 『당회요』 권38, 葬, 정원 13년 5월 조, 812쪽 참조.

160) 『신당서』 권7, 덕종본기, 13년 9월 조, “盧邁罷”(201쪽).

161) 『구당서』 권39, 지리지2, 河北道, 定州(上) 조, 1510~ 1511쪽.

를 내려 사신을 보냈으나 금지할 수 없었다.<sup>162)</sup> 계유일 宰相 賈耽이 질병으로 재상 자리를 사양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정축일 徐泗節度使 張建封이 내조하니 황제가 칭찬하였고 다음 날 延英에서 召對하였다. 계사일 贈太傅 마수를 태묘에 합사하고[耐廟] 所司에게 명하여 少牢를 내어 제사지내고 이어서 鹵簿를 지급하며 집[宅]에서 태묘에 이르게 하였다.

12월 경진일 右龍武統軍 韓遊瓌가 졸하였다.

[정월] 14년(798) 봄 정월 임오일이 초하루이다.<sup>163)</sup> 경인일 조서를 내려 諸道州府에서 貞元 8년에서 11년까지의 모든 兩稅 및 榷酒錢으로 百姓의 腹內에 있는 총 560만 7천 貫을 모두 면제하였다.<sup>164)</sup> 갑오일 칙서를 내려 “근래에 朝官이 혹 서로 왕래하니, 金吾가 모두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그 관계가 만일 親故이거나 혹 이전 同僚라고 하면 삼복[伏]·납일[臘]·歲時에 모름지기 왕래하는 것은 또한 人倫常禮이니 지금 이후로 상주하여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장건봉이 상주하여 건의한 때문이다.<sup>165)</sup>

162)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3년 10월 조, “…命兵部郎中盧羣往詰之, 少誠曰, ‘開此水, 大利於人.’ 羣曰, ‘君令臣行, 雖利, 人臣敢專乎! 公承天子之令而不從, 何以使下吏從公之令乎!’ 少誠遽爲之罷役”(7578쪽).

163) 『신당서』 권7, 덕종본기, 14년 정월 조에는 경술일이 초하루이고 이 날에 京師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한다(195쪽).

164) 『전당문』 권53, 德宗4, 放免諸道積欠詔 조, “朕臨禦兆人, 爲之父母, 思底於道, 俾安其生. 然則邦計不可不供, 封陞且以集事, 而累經水旱, 或有流庸, 積成連懸, 寢以凋瘵. 每念於此, 惕然疚懷, 中宵以興, 思拯其弊. 將以憫其疾苦, 致於康寧, 豈可更擾疲人, 尙爲徵斂, 宜宏善貸, 以惠困窮. 其諸道州府應欠負貞元八年九年十年兩稅, 及榷酒錢, 總五百六十萬七千餘貫, 在百姓腹內, 一切並免. 如已徵得在官者, 宜令所司具條疏聞奏. 嗚呼! 天生蒸人, 君爲司牧, 百姓不足, 過實在子. 永思其艱, 載用祗畏, 宣示中外, 令知朕懷”(572쪽); 『책부원구』 권491, 邦計部9, 鑄復3, 정원 14년 정월 조, 5870~5871쪽.

165) 『당회요』 권29, 追賞, 630쪽; 『책부원구』 권64, 제왕부64, 發號令3, 정원 14년 정

2월 임자일이 초하루이다. 무오일 황제가 麟德殿으로 나가 文武百僚에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처음에 破陣樂을 연주하고 九部樂을 두루 연주하였으며 宮中の歌舞妓 십 수인이 마당[庭]에 늘어섰다. 이에 앞서 황제가 中和樂舞曲을 만들어<sup>166)</sup> 이 날 연주하였는데, 날이 저물고서야 바야흐로 그만두었다. 근래에 조서를 내려 2월 1일 中和節에 연회를 열게 하였으나 눈과 비가 내려 이 날로 바꾸었다. 황제가 또 ‘中春麟德殿宴羣臣詩 8韻’을 지어 羣臣에게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을해일 光蔡節度에게 彰義軍이라는 [명호를] 하사하였다.<sup>167)</sup>

3월 병신일 右神策行營節度·鳳翔隴右觀察使·檢校尙書右僕射·鳳翔尹 邢君牙가 졸하였다. 右神策將軍 張昌을 鳳翔尹·右神策行營節度·鳳翔隴右節度使로 삼고 이에 이름을 敬則으로 고쳤다.<sup>168)</sup> [鳳翔 監軍使 西門去奢가 그 장수 夏侯衍을 살해하였다].<sup>169)</sup>

여름 4월 을축일 左諫議大夫·平章事 崔損을 修奉八陵使로 삼았다. 이에 앞서 昭陵의 寢殿이 불에 탔는데 이에 이르러 獻·昭·乾·定·泰 다섯 陵에 각각 屋 380칸을 짓고 橋·元·建 세 능은 파손된 것에 의거하여 보수하여 지었다.<sup>170)</sup>

월 조, 719쪽; 『신당문』 권53, 德宗4, 聽朝官伏臘過從詔 조, 572쪽.

166) 『신당서』 권22, 禮樂志12, “昭義軍節度使王虔休以德宗誕辰未有大樂, 乃作繼天誕聖樂, 以宮爲調, 帝因作中和樂舞”(478쪽).

167) 『자치통감』 권235, 정원 14년 2월 조, 7580쪽.

168) 『구당서』 권144, 張敬則傳, 3928쪽.

169) 『신당서』 권7, 狄宗本기, 정원 14년 3월 조, 201쪽.

170) 『당회요』 권20, 陵議, 정원 14년 4월 조, “詔曰, ‘昭陵舊寢宮在山上, 置來多年, 曾經野火燒蕪, 摧毀略盡, 其宮尋移在瑤臺寺側. ……’ …… 初, 正月中, 令有司修葺陵寢, 以昭陵舊宮, 先因火焚毀, 故詔百官詳議. 議者多云舊宮既被焚蕪, 請移就山下, 或有議請修舊宮者, 上意亦不欲遷移, 由是復以山下爲定. 于是遣右諫議大夫平章事崔損充修八陵使. 及所司計料, 獻·昭·乾·定·泰五陵, 各造屋三百七十八間, 橋陵一百四十間, 元陵三十間, 王建陵不復創造, 但修葺而已. 所緣寢陵中帷幄牀褥一事以上, 竝令制置, 上親閱焉”(461~463쪽); 『책부원구』 권

5월 경진일이 초하루이다. 갑오일 이전 東都留守·東畿汝都防禦使·檢校吏部尙書 杜亞가 졸하였다. 병오일 戶部侍郎·判度支 蘇弁을 太子詹事로 삼았다. 황제가 특별히 度支郎中 于頔를 延英으로 불러 兼御史中丞으로 삼고 金紫를 하사하며 判度支에 임명하였다.

윤[5]월 경신일 左神策行營節度 韓全義를 夏州刺史·兼鹽夏綏銀節度使로 삼아 韓潭을 대신하게 하였다. 갑자일 太子詹事 蘇弁을 汀州司戶로 좌천시키고, 兄 贊善大夫 [蘇]袞을 永州司戶로 좌천시키고, 이전 京兆府士曹 [蘇]冕을 信州司戶로 좌천시켰다. [신해일 서북쪽으로 별이 떨어졌다. 신유일 長武城軍에서 난이 일어나 그 절도사 韓全義를 몰아냈다].<sup>171)</sup>

6월 계묘일 태자빈객 盧邁가 졸하였다. 을사일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太倉의 粟을 내어 賑貸하였다. [병신일 歸化堡軍에서 난이 일어나 그 장수 張國誠을 몰아내자 涇原節度使 劉昌이 패배시켰다].<sup>172)</sup>

가을 7월 吉州刺史 杜春을 邕管經略使로 삼았다. 을묘일 경조운 한고를 撫州司馬로 좌천시켰다. 右金吾將軍 吳湊를 延英으로 불러 京兆尹에 제수하고 바로 경조부로 들어가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 여름이 매우 더웠다. 임신일 給事中·同中書門下平章事 趙宗儒를 太子左庶子로 삼고, 左諫議大夫·平章事 崔損을 門下侍郎·平章事로 삼고, 公부시랑 鄭餘慶을 中書侍郎·同平章事로 삼았다. 左神策護軍中尉 霍僊鳴이 졸하였다. 정축일 환관 第五守亮에게 명하여 曷善명을 대신하여 中尉로 삼았다. 기묘일 좌우신책군에 統軍을 설치하고 품계와 봉급은 六軍統軍例에 따랐다. 갑오일 崔損이 八陵의 寢宮 수리[修奉]를 마치자 軍신이 宣政殿에서 [예를] 행하며 축하하였다. 浙西觀察使·潤州刺史 王緯가 졸하였다.

30. 帝王部30, 奉先3, 정원 14년 3월 조, 330쪽.

171)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4년 윤월 조, 201쪽.

172)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4년 6월 조, 201쪽.

9월 정미일이 초하루이다. 을유일 山南東道節度使·檢校尙書右僕射·襄州刺史 樊澤이 죽하였다. 을묘일 同州刺史 崔宗을 陝州大都督府長史·陝虢觀察水陸轉運使로 삼고, 浙東觀察 李若初를 潤州刺史·浙西觀察使及諸道鹽鐵轉運使로 삼고, 또 常州刺史 裴肅을 越州刺史·浙東觀察使로 삼았다. 병진일 陝虢觀察使 于頔을 襄州刺史·山南東道節度使로 삼았다. 정묘일 杞王 [李]倕가 흥거하였다.<sup>173)</sup> 태상경 杜確을 同州刺史·本州防禦·長春宮使로 삼았다. 계유일 諫議大夫 田登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兵部の 武舉人이 활과 화살을 가진 채 수백 인(數千百人)이 皇城으로 들어오는데,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를 듣고는 두려워하며 곧 명령을 내려 武舉를 그만두게 하였다.<sup>174)</sup>

겨울 10월 계유일 흉년이 들어 곡물이 귀해져 太倉의 粟 30만 석을 내어 開場하여 쌀을 팔아 백성에게 혜택을 주었다. 경자일 夏州 韓全義가 鹽州에서 토번[을 격파하였다고] 상주하였다.<sup>175)</sup>

11월 기미일 韋臯가 『開西南蠻事狀』 20권<sup>176)</sup>을 진상하였는데, 南詔를 수복한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12월 무자일 太子少師·致仕 郢國公 韋倫이 죽하였다. 계유일 東都

173)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4년 9월 조, 201쪽.

174) 『당회요』 권59, 尙書省諸司下, 兵部侍郎, 정원 14년 9월 조, “勅, ‘鄉貢武舉并應百隻箭及三十隻箭人等, 今年宜權停.’ 時諫議大夫田敦, 因蒙召對, 奏言, ……上聞而矍然, 故命停之, 其實武舉者, 每歲不過十人, 時議惡敦虛辭, 輒亂舊章, 以圖稱旨, 自是訖于貞元, 更不復置”(1211쪽); 『책부원구』 권640, 貢舉部2, 條制2, 정원 14년 9월 조, 7680쪽.

175)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4년 10월 조, 7581쪽.

176) 開西南蠻事狀은 『당회요』에서는 정원 14년 11월 西川節度使 위고가 開復西南夷事狀 10권을 바쳤다고 하고(권36, 修撰, 769쪽), 『신당서』에서는 開復西南夷事狀 17권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권59, 藝文志3, 丙部子錄, 兵書類, 1551쪽). 또한 『자치통감』 권234, 덕종 정원 10년 정월 조의 考異에서 ‘西南夷事狀’을 인용한 것이 보인다(7552쪽).

승嘉倉의粟 7만 석을 내어 開場하여 쌀을 팔아 河南의 굶주린 백성에게 혜택을 주었다.<sup>177)</sup> 기해일 남조의 異牟尋이 사자를 보내 원단[正旦]을 축하하였다. 明州鎮將 栗鍾이 명주자사 盧雲을 살해하였다.<sup>178)</sup>

[정원] 15년(799) 봄 정월 병오일이 초하루이다. 갑인일 雅王 [李]逸이 흉거하였다.<sup>179)</sup> 갑술일 浙西觀察使 李若初가 졸하였다.

2월 中和節 宴會를罷하였는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sup>180)</sup> 정축일 宣武軍節度使·檢校左僕射·平章事·汴州刺史 董晉이 졸하였다. 을유일 行軍司馬 陸長源을 檢校禮部尙書·汴州刺史·御史大夫·宣武軍節度度支營田·汴宋毫穎觀察等使로 삼았다. 常州刺史 李錡를 潤州刺史·浙西觀察使及諸道鹽鐵轉運使로 삼았다. 이 날에 汴州 군대가 난을 일으켜 육장원 및 節度判官 孟叔度·丘穎을 살해하고 군인들이 그들을 저며[攔] 먹었다.<sup>181)</sup> 監軍 俱文珍은 宋州刺史 劉逸準이 오래도록 변주의 大將으로 있었으므로 서신을 보내 [유일준을] 불러 난을 평정하게 하였다.<sup>182)</sup> 을축일 송주자사 유일준을 檢校工部尙書·兼汴州刺史·宣武軍節度使로 삼고 아울러 全諒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sup>183)</sup> 을미일 裴肅이 상주하여

177)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4년 是冬 조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고 京師에 기근이 들었다고 전한다(201쪽).

178) 『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4년 12월 조, “明州將栗鍾殺其刺史盧雲以反”(201쪽); 『자치통감』 권235, 정원 14년 10월 조, “明州鎮將栗鍾姓譜[호삼성 주: 栗姓, 栗陸氏之後. 漢長安有富室栗氏] 殺刺史盧雲, 誘山越作亂, 攻陷浙東州縣. [호삼성 주: 明州山越, 今慈溪·鄞縣南界·奉化縣西北界山民也]”(7582쪽).

179) 『신당서』 권7, 정원 15년 정월 조, 201쪽.

180) 『책부원구』 권110, 帝王部110, 宴享2, 정원 15년 정월 조, 1315쪽.

181) 『구당서』 권145, 陸長源傳, “……長源曰, ‘不可使我同河北賊, 以錢買健兒取旌節.’ 兵士怨怒滋甚, 乃執長源及叔度等攔而食之, 斯須骨肉糜散. 長源死之日, 詔下以爲節度使, 及聞其死, 中外惜之, 贈尙書右僕射”(3937~3938쪽).

182) 『신당서』 권7, 정원 15년 2월 조, 202쪽.

183)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5년 2월 조, 7582~7583쪽. 유일준이 이름을 하사

台州에서 粟鎰을 잡아 바친다고 하고 獨柳樹에서 참수하였다.<sup>184)</sup> 계묘일 3월의 군신 연회[宴賞]를 취소하였는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太倉의 粟 8만 석을 내어 京畿의 諸縣에 팔았다.

3월 갑인일 吳少誠이 唐州를 침략하여 監軍 邵國朝를 살해하고 거주민 천여 인을 약탈하여 갔다.<sup>185)</sup> 정사일 度支郎中·兼中丞 于頔를 호부시랑으로 삼고, 判度支는 이전대로 두었다. 무오일 昭義軍節度使·檢校工部尙書 王虔休가 졸하였다. 무진일 河陽三城節度使 李元을 潞州長史·昭義軍節度·澤潞磁邢洺觀察使로 삼고, 河陽節度押衙 衡濟를 懷州刺史·河陽三城懷州節度使로 삼았다. 신미일 太子少師로 致仕한 于頔가 졸하였다. 임신일 易州 滿城縣에 永清軍을 설치하였다. 계유일 江淮에 명하여 해마다 米 200만 石을 운송하게 하였다. 비록 이러한 명이 있었으나 해마다 운송하는 것은 40만 석에 지나지 않았다.

4월<sup>186)</sup> 정축일 오래도록 가뭄이 들었으므로 陰陽人에게 法術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 임오일 內侍省에 內給事 2員을 더 설치하였다.<sup>187)</sup> 계미일 安州刺史 伊慎을 安黃節度營田觀察使로 삼았다. 경인일 京城內外 諸軍縣鎮의 職員官은 현재 모두 5만 8천 271인데, 마땅히 한 사람당 粟 1석을 지급하였다. 을미일 特進·兵部尙書 歸崇敬이 졸하였다.

5월 갑진일이 초하루이다. 무진일 宗正卿 嗣吳王 [李]巖이 흉거하였다.

---

받은 일은 『자치통감』에서 기축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병준, 『舊唐書』·『新唐書』 邢君牙, 劉全諒 列傳 譯註, 『역사와 담론』 67, 2013, 378~379쪽 등 참조.

184) 『자치통감』 권235, 정원 15년 2월 조, 7583쪽. 율평은 4월 을미일에 주살되었다(『신당서』 권7, 덕종본기, 정원 15년 4월 조, 202쪽).

185) 『신당서』 권7, 정원 15년 3월 조, “彰義軍節度使吳少誠反, 陷唐州, 守將張嘉瑜死之”(202쪽); 『자치통감』 권235, 정원 15년 3월 조, 7583쪽.

186) 이달에 남조의 이모심이 韋阜와 함께 토번을 공격하자고 약속하였으나 군량문제로 출병을 미룬 사건이 보인다. 『자치통감』 권235, 덕종 정원 15년 4월 조, 7583쪽.

187) 『당회요』 권65, 內侍省, 정원 15년 4월 조, 1339쪽.

6월 기묘일 黔中觀察使·御史中丞 王礎가 졸하였다. 계사일 山南西道節度使·檢校尙書左僕射·平章事 嚴震이 졸하였다.

가을 7월 을사일 興州刺史·興元都虞候 嚴礪를 興元尹·兼御史大夫·山南西道節度·度支營田·觀察等使로 삼았다. 병오일 故唐安公主에게 莊穆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공주에게 시호를 내린 것은 唐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미일 王礎가 졸하자 1일 동안 廢朝하였다. 관찰사가卒하였을 때 폐조한 것은 왕초로부터 시작되었다. 무오일 간의대부 苗拯을 萬州刺史, 左拾遺 李繁을 播州參軍으로 좌천시켰는데, 사사ροι 嚴礪를 除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章疏를 올리지 않은 채 거짓으로 누차 上疏하였다고 한 때문이다.

8월 임신일이 초하루이다. 병신일 陳許節度使·檢校尙書右僕射·許州刺史 曲環이 졸하였다. 정유일 洋州刺史 韋士宗을 黔中觀察使로 삼았다. 병오일 陳許兵馬使·前陳州刺史 上官泚(세)를 허주자사·진허절도사로 삼았다. 오소성의 謀逆이 점점 심해져서 [許州 속현인] 臨穎<sup>188)</sup>을 함락시키고 나아가 허주를 포위하였다. 경술일 宣武軍節度使·檢校工部尙書·汴州刺史 劉全諒이 졸하였다. 병진일 제서를 내려

오소성은 파격적으로 擢用하여 [번진의] 節旄를 수여하니 지위[秩]가 재상[端揆]의 영예에 있고 직임은 列城의 막중함을 총괄하였다. 힘써 보답하고 나라의 典章을 지키길 바랐으나 도리어 멋대로 법도를 위배하고 스스로 나쁜 쪽으로 들어갔다. 흉악과 교활이 성품이 되어 일을 꾸미는 것이 多端하고 마음대로 甲兵을 움직여 영토[封壤]를 침범하였다. 壽州의 茶園을 갑자기[輒] 침범하여 약탈하고 唐州의 詔使(즉 監軍)를 숨어 살해하였다[殺傷].<sup>189)</sup> 국법

188) 『구당서』 권38, 지리지1, 河南道, 許州 조, 1432쪽.

189) 정병준, 『舊唐書』·『新唐書』 吳少誠·吳少陽 등 列傳 譯註, 『동국사학』 60, 2016, 302쪽.

[國章]을 침범하였는데, 罪는 赦의 범위가 아니다[無赦]. 짐이 보건대 王者의 德은 생을 아끼는 데 있고 人君의 본체는 힘써 포용[含垢]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기를 급혀 죄를 용서할[宥罪] 지언정 사람에게 잔혹하게 군대를 일으키는 것을 두지 않는다, 위로 宗社의 위엄을 늦추고 밖으로 忠賢의 요청을 억제하며 고치기를 바라고 優容을 논의하였다. 인접 지역의 喪을 틈 타 貪亂의 뜻을 드러내어 縣畠을 불사르며 약탈하고 나의 백성을 잔인하게 해쳤다. 짐은 그래도 잘못을 알기를 바라 치욕을 참고 恩命을 반포하며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許州을 공격하여 꺾박하고 전갈독을 내뿜으며 마음대로 殺戮을 행하여 백성들[黎蒸]에게 해독을 끼쳤다. 惡이 쌓이고 禍가 넘치니 人神이 함께 버리며 토벌해야 한다고 말하니 실로 슬픈 생각이 든다. 마땅히 諸道에게 각각 군대를 내게 하여 서로 掎角을 이루어 일제히 나아가게 한다. 오소성이 가진 官爵을 모두 마땅히 삭탈한다.<sup>190)</sup>

라고 하였다. 기사일 지금부터 中和·重陽<sup>191)</sup> 두 절기[節]에는 매 節에 단지 하루만 도살을 금하게 하였다. 신유일 大理評事·宣武軍都知兵馬使 韓弘을 檢校工部尚書·兼汴州刺史·御史大夫·宣武軍節度使에 임명하였다.<sup>192)</sup>

190) 『당대조명집』 권119, 討伐上, 『討吾少誠詔』, “…… 宜令宣武軍·河陽三城·鄭滑等州節度·東都·汝州等軍, 掎角相應, 同逼申光蔡州. 恆冀·幽州·淄青·魏博·易定·澤潞·太原·淮南等州·徐泗·山南東道·鄂岳等軍, 各發士馬, 逐便掎角齊進, 同爲討伐. …”(629쪽); 『자치통감』 권235, 정원 15년 8월 조, “丙辰, 詔削奪吳少誠官爵, 令諸道進兵討之”(7584쪽). 汝州와 관련해서는 吳廷燮, 『唐方鎮年表』 3, 東畿, 정원 5년 조, 中華書局, 1980, 1165쪽 참조.

191) 중화절은 앞의 정원 5년 정월 조 및 『신당서』 권139, 李泌傳, “泌謂, ‘廢正月晦, 以二月朔爲中和節, ……’. 帝悅, 乃著令”(4637쪽) 참조. 중양절은 9월 9일을 말한다. 『구당서』 권149, 歸融傳, “上曰, ‘去年重陽, 取九月十九日, 未失重陽之意, 今改取十三日可也’”(4021쪽)라는 것도 보인다.

192) 『구당서』 권156, 韓弘傳, 4134쪽; 『신당서』 권158, 韓愈傳, 4944쪽; 韓愈, 『司徒兼

겨울 10월 기축일 邕王 [李]諫이 흥거하였다. 吏部侍郎 奚陟이 즐하였다.

11월 을사일 동지에 朝會를 열지 않았는데, 군사를 일으킨 때문이다. 임자일 襄州의 于頔이 朗山에서 淮西의 賊 3천인을 격파했다고 상주하였다.

12월 경오일 초하루 朔方等道副元帥·河中絳州節度使·檢校司徒·兼奉朔<sup>193)</sup>中書令 渾瑊이 흥거하였다. 을미일 淮西의 賊과 小潑河에서 싸웠으나 王師가 불리하여 諸軍이 스스로 무너졌다. 정유일 同州刺史 杜確을 河中尹·河中絳州觀察使로 삼았다.

[정원] 16년(800) 봄 정월 경자일이 초하루이다. 을사일 恆冀·定州·許·河陽 네 번진[鎮]의 군대가 賊(즉 오소성)과 싸웠으나 모두 불리하여 물러났다.<sup>194)</sup> 南詔가 ‘奉聖樂舞曲’<sup>195)</sup>을 바치자 황제가 [大明宮] 麟德殿<sup>196)</sup> 앞에서 관람[閱]하였다.

2월 기유일 左神策行營·銀夏節度等使 韓全義를 蔡州行營招討使,<sup>197)</sup> 진허절도사 상관세를 부사로 삼았다. 기축일 左龍武統軍 程懷直이 즐하

侍中中書令贈太尉許國公(韓弘)神道碑銘, 『韓昌黎文集』 권7, 碑誌, 上海古籍出版社, 1987, 504쪽.

193) 아마도 衍文인 듯하다.

194)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정월 조, 7586쪽.

195) 『신당서』 권22, 禮樂志, “貞元中, 南詔異牟尋遣使詣劍南西川節度使韋臯, 言欲獻夷中歌曲, 且令驃國進樂. 臯乃作南詔奉聖樂, 用黃鍾之均, 舞六成, 工六十四人, 贊引二人, 序曲二十八疊, 執羽而舞「南詔奉聖樂」字, 曲將終, 雷鼓作於四隅, 舞者皆拜, 金聲作而起, 執羽稽首, 以象朝覲”(480쪽); 『同』 권222하, 南蠻下, 驃傳, 6309쪽.

196) 와타나베 신이치로 저, 문정희 등 역, 『천공의 옥좌』, 신서원, 2002, 75쪽의 ‘장안성 대명궁도’ 참조.

197)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2월 조, “以全義爲蔡州四面行營招討使, 十七道皆受全義節度”(7586쪽).

였다. 기유일 華州刺史·潼關防禦·鎮國軍使 盧徵이 졸하였다. 임자일 尚書右丞 袁滋를 화주자사·동관방어·진국군사로 삼았다.

여름 4월 정해일 黔中の 知宴設吏 傅近<sup>198)</sup>이 관찰사 위사종<sup>199)</sup>을 몰아냈다. 기축일 義成軍節度使 姚南仲을 右僕射에 임명하였다. 權知新羅國事 金俊邕<sup>200)</sup>에게 조부[祖] 開府·檢校太尉·雞林州都督·新羅國王을 계승하게 하였다. 신묘일 義成軍行軍司馬 盧羣을 滑州刺史·兼御史中丞·義成軍節度使로 삼았다. 임신일 檢校兵部尚書·京兆尹 吳湊이 졸하였다.

5월 무술일 초하루 비가 와서 조회를 열지 않았다. 경술일 한전의가 蔡의 賊將 오소성과 澗水 남쪽에서 싸웠으나 王師가 대패하였다. 徐泗濠節度使·檢校尚書右僕射·徐州刺史 張建封이 졸하였다. 임자일 徐州에서 軍亂이 일어나 行軍司馬 韋夏卿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건봉의 아들 [張]愔을 압박하여 유후로 삼았다.<sup>201)</sup> 병인일 위사종이 되돌아[却] 黔州로 들어갔다.<sup>202)</sup> 정묘일 吏部侍郎 顧少連을 경조윤으로 삼았다.

6월 병오일 鄆州 李師古<sup>203)</sup>와 淮南 杜祐에게 모두 同平章事를 더해주

198)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4월 조, “……, 丁亥, 牙將傅近等逐之, 出奔施州”(7587쪽).

199) 앞의 전 해 8월 조 참조.

200)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4월 조, “新羅王敬則卒, 庚寅, 冊命其嫡孫俊邕爲新羅王”(7587쪽); 同 5월 조, “新羅王俊邕卒, 國人立其子重熙”(7590쪽);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哀莊王 원년(800) 조, “初元聖之薨也, 唐德宗遣司封郎中兼御史中丞韋丹, 持節弔慰, 且冊命王俊邕(즉 昭聖王)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新羅王, 丹至鄆州, 聞王薨乃還”; 同 9년(808) 조, “遣[金]力奇入唐朝貢. 力奇上言, 貞元十六年, 詔冊臣故主金俊邕爲新羅王, 母申氏爲大妃, 妻叔氏爲王妃. 冊使韋丹至中路, 聞王薨却迴. 其冊在中書省, 今臣還國, 伏請授臣以歸. 勅金俊邕等冊, 宜令鴻臚寺, 於中書省受領, 至寺, 宜授與金力奇, 領奉歸國, 仍賜王叔彥昇及其弟仲恭等門戟, 令本國準例給之”.

201)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5월 조, 7588~7589쪽.

202)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5월 조, “丙寅, 韋士宗復入黔中”(7589쪽).

고 두우에게 徐·泗·濠節度を 兼領하게 하였으며, 前虢州參軍 張愔을 起復시켜 驍衛將軍·兼徐州刺史·御史中丞·本州團練使·知徐州留後로 삼았다.

가을 7월 湖南觀察使 呂渭가 졸하였다.

8월 계유일 河中尹 王○를 潭州刺史·호남관찰사로 삼았다.

9월 吳少誠을 용서[宥]하였다. 駙馬都尉 郭曖가 졸하였다. 義成軍節度使 盧羣이 졸하였다. 병오일 前太常卿 裴鬱을 졸하였다. 무진일 左丞 李元素를 滑州刺史·兼御史大夫·義成軍節度使로 삼았다. 경술일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鄭餘慶을 郴州司馬, 戶部侍郎·判度支 于頔(배)를 泉州司戶로 좌천시켰다[貶]. 戶部侍郎 王紹를 判度支, 戶部郎中 崔從質을 호부시랑으로 삼았다. 계유일 오소성의 賊이 官軍을 압박하여 澗水砦 아래에 군영을 두자[營] 한전의가 陳州로 물러나 지키고<sup>204</sup> 諸軍이 흩어져 本道로 돌아감에 따라 官軍이 세력을 떨치지 못했다[不振]. 河南少尹 張式을 河南尹·水陸轉運使로 삼았다. 경신일 太常卿 齊抗을 中書侍郎·同平章事로 삼았다. 계해일 度王 [李]諒을 徐州節度使로 삼았고 장음을 유후로 삼았다.

겨울 10월 신미일 興元 [산남서도절도사] 嚴礪<sup>205</sup>가 監軍의 뜻에 영합하여 流人 通州別駕 崔河圖를 誣奏하여 崖州로 長流시켜 賜死하였는데, 人士들이 슬프게 생각하였다. 오소성이 병사를 이끌어 蔡州로 돌아가 表를 올려 죄를 기다렸다. 무자일 조서를 내려 오소성의 [죄]를 씻어주고 그 관작을 회복시켰다.<sup>206</sup> 을축일 河東節度使·檢校禮部尚書·太原尹·

203)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5월 조, “丙戌, 加淄青節度使李師古同平章事”(7589쪽).

204)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9월 조, “吳少誠進逼澗水數里置營, 韓全義復帥諸軍退保陳州. …”(7591쪽).

205) 앞의 정원 15년 7월 조 참조.

206)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10월 조, “戊子, 詔赦少誠及彰義將士, 復其官爵”

兼御史大夫·北都留守 李悅이 줄하자 갑오일 河東行軍司馬 鄭儋(담)을  
검교공부상서·태원윤·하동절도사로 삼았다. [吐蕃이 자주 韋臯에게  
패하였다].<sup>207)</sup>

11월 계묘일 泗州·濠州를 마땅히 淮南觀察使에 연속시켰다. 무신일  
太府卿 韋渠牟를 太常寺卿에 임명하였다.

12월 무인일 吏부의 復考判官<sup>208)</sup> 및 禮부의 別頭貢舉<sup>209)</sup>를 폐지하였다.

[정월] 17년(810) 봄 정월 갑오일이 초하루이다. 갑인일 한전의가 蔡  
州行營에서 돌아오자 조서를 내려 華州<sup>210)</sup>로 돌아가 주둔[鎭]하게 하였  
다.<sup>211)</sup>

(7592쪽).

207)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10월 조, 7593쪽.

208) 『구당서』 권136, 齊抗傳, “先時每年吏部選人試判, 別奏官考覆, 第其上下, 既考, 中書門下復奏擇官覆定, 寢以爲例. 抗乃奏曰, ‘吏部尚書·侍郎, 已是朝廷精選, 不宜別差考官重覆’. 其年他官考判訖, 俾吏部侍郎自覆, 一歲遂除考判官, 蓋抗所論奏也. 故事, 禮部侍郎掌貢舉, 其親故即試於考功, 謂之‘別頭舉人’, 抗亦奏罷之“(3756~3757쪽); 『신당서』 권128, 제항전, “初, 吏部歲考書言, 以它官第上下, 中書·門下遣官覆實, 以爲常. 抗以尚書·侍郎皆大臣選, 今更覆覈, 非任人勿疑之道. 禮部侍郎試貢士, 其姻舊悉試考功, 謂之‘別頭’, 皆奏罷之“(4471~4472쪽).

209) 『唐會要』 권76, 貢舉中, 緣舉雜錄, 정원 16년 12월 조, “勅, 禮部別頭舉人, 宜委禮部考試, 不須置別頭”(上海古籍出版社, 1639쪽); 『冊府元龜』 권640, 貢舉部, 條制, 同 연월 조, 中華書局, 7681쪽(앞의 『당회요』와 동일); 『구당서』 권168, 高錯(개)傳, “大和三年, 準敕試別頭進士明經鄭齊之等十八人. 榜出之後, 語辭紛競, 監察御史姚中立以聞, 詔錯審定, 乃升李景·王淑等, 人以爲公“(4388쪽); 『신당서』 권44, 選舉志上, “初, 禮部侍郎親故移試考功, 謂之別頭. [貞元]十六年, 中書舍人高郢奏罷, 議者是之. …… [元和]十三年, 權知禮部侍郎庾承宣奏復考功別頭試“(1165쪽).

210) 夏州의 오자로 보인다.

211) 정병준, 『舊唐書』·『新唐書』 吳少誠·吳少陽 등 列傳 譯註의 『구당서』·『신당서』 한전의전 역주, 320쪽, 322쪽 참조

[윤정월 갑술일 (한전의가) 夏州로 돌아갔다].<sup>212)</sup>

2월 기사일 초하루 군신들에게 연회를 曲江亭에서 베풀었는데, 황제가 ‘中和節賜宴曲江詩’ 六韻을 지어[賦] 하사하였다. 정유일 우박이 내렸다. 기해일 서리[雨霜]가 내렸다. 무신일 밤에 천둥과 벼락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경술일 큰 비눈[雨雪]과 함께 우박이 내렸다.

3월 을축일 군신들에게 연회를 曲江亭에서 베풀었다. 기사일 黔中觀察使 韋士宗이 다시 번진 군사들[三軍]에게 쫓겨났다. 계유일 衢州刺史 鄭式瞻 이絹 5천 필과 은 2천 냥을 진상하자 황제가 말하길 “정식첨은 장죄[贓]를 범하였으므로 이미 御史에게 조서를 내려 按問하게 하였다. 진상한 것은 마땅히 左藏庫로 보내라”라고 하였다. 정축일 天下州府의 別駕·司馬·田曹·參軍을 줄이고[省], 京兆·河南·太原 3府를 제외한 諸府의 判司가 두 曹인 경우는 하나를 줄였다.

여름 4월 정미일 처음으로 駙馬 및 郡·縣主의 남편[媼]으로 아들이 없어서 기른 남자는 모친의 廕으로 [관작을] 취할 수 없게 하였다. 신해일 諫議大夫 裴佖을 黔中觀察使로 삼았다.

5월 임술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 을유일 邠寧節度使·檢校工部尚書·邠州刺史 楊朝晟이 졸하였다.<sup>213)</sup> 병술일 공부시랑 趙植을 廣州刺史·兼御史大夫·嶺南節度使로 삼았다.

6월 무술일 定平鎮<sup>214)</sup>兵馬使 李朝宗을 檢校工部尚書·兼邠州刺史·朔方邠寧慶節度使로 삼고, 환관 楊志廉을 右神策護軍中尉로 삼았다. 浙

212) 『자치통감』 권236, 정월 17년 윤정월 조, 7594쪽.

213) 『자치통감』 권236, 정월 17년 5월 조, “朔方邠·寧·慶節度使楊朝晟防秋于寧州, [호삼성 주: 朔方兵分居邠, 故仍以朔方軍號冠之, 其實只節度邠·寧·慶三州] 乙酉, 薨”(7595쪽).

214) 『신당서』 권37, 지리지1, 關內道, 寧州·彭原郡 定平[縣] 조, “上, 武德二年析定安置, 後隸邠州. 元和三年復來屬, 四年隸左神策軍. 有高掖城. 唐末以縣置衍州”(969쪽).

西 사람 崔善真이 궁궐에 이르러 上書하여 浙西觀察使 李錡의 죄상을 논하였다. 황제가 奏를 열람하고 기쁘지 않아 최선진에게 형구를 채워 이기에게 압송하게 하였다. [이기는] 구덩이를 파놓고 최선진을 기다렸다가 그가 이르자 형구와 함께 밀어 물어버렸다. 이로 인해 이기는 마음대로 叛하였다. 기유일 邠寧兵馬使 高固를 邠州刺史·兼御史大夫·邠寧慶節度使로 삼았다. 정사일 成德軍節度使·恆冀深趙德棣觀察等使·恆州大都督府長史·檢校太尉·中書令·琅邪郡王 王武俊이 흥거하자 太師로 추증하고 시호를 忠烈이라 하였다.

가을 7월 무인일 吐蕃이 鹽州를 침략하였다. 신사일 前成德軍節度副使·檢校工部尚書·知恆府事·清河郡王 王士真을 起復시켜 恆州長史·充成德軍節度使에 임명하였다.<sup>215)</sup> 을유일 太常卿 韋渠牟가 졸하였다. 기축일 吐蕃이 麟州를 함락시켜 刺史 郭鋒을 살해하고 城壘를 무너뜨리고 갔다.

8월 무오일 河東行軍司馬 嚴綬를 檢校工部尚書·兼太原尹·御史大夫·河東節度使로 삼았다.

9월 임술일 韋皋가 토번을 雅州에서 대파하였다고 상주하였다.<sup>216)</sup> 무진일 군신들에게 曲江에서 연회를 열고 황제가 ‘九日賜宴曲江亭詩’ 6운을 지어 하사하였다. 정축일 예부상서 李齊運이 졸하였다.

겨울 10월 韋皋에게 檢校司徒·中書令을 더하고 南康郡王에 봉하였는데, 토번을 격파한 공로에 상을 준 것이다. 무오일 鹽州刺史 杜彥先이 성을 방기하고 慶州로 달아났다. 신미일 宰相 賈耽이 ‘海內華夷圖’ 및 『古今郡國縣道四夷述』 40권을 올렸다.<sup>217)</sup> 갑술일 翰林侍詔 戴少平이 죽은

215) 『자치통감』 권236, 정원 17년 7월 조, “以成德軍節度副使王士真爲節度使”(7597쪽). 정병준, 『舊唐書』·『新唐書』李納·李師古 등 列傳 譯註, 『한국고대사탐구』 22, 415쪽 참고.

216) 『자치통감』 권236, 정원 17년 9월 조, 7598쪽.

지 16일 후 다시 살아났다. 경술일 경조윤 고소연을 이부상서로 삼고 吏部侍郎 韋夏卿을 경조윤으로 삼았다. 淮南節度使 杜祐가 『通典』 무릇 9門, 모두 200권을 진상하였다.

[정월] 18년(802) 봄 정월 무오일 초하루에 큰 雨雪이 내려 朝賀를 열지 않았다. 을축일 驃國王이 사신 悉利移를 보내 朝貢하고 아울러 그 나라 樂 12曲과 樂工 35인을 바쳤다. 을해일 韋臯가 사로잡은 蕃의 相인 論莽熱을 헌상하였다. 경진일 常州刺史 賈全을 越州刺史·浙東觀察使로 삼았다.

2월 무자일 초하루에 군신들에게 馬璘의 山池<sup>218</sup>)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3월 계미일 劍南東川行軍司馬 李康을 梓州刺史·兼御史大夫·劍南東川節度使로 삼았다. 을축일 군신들에게 馬璘의 山池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기사일 蘄州刺史 鄭紳을 鄂州刺史·鄂岳蘄沔觀察使로 삼았다. 계유일 浙東團練副使 齊總을 衢州刺史로 삼았는데, 제충이 마음대로 부세를 거두어 進奉하여 은총을 바랐으므로 給事中 許孟容이 制書를 封還하였

217) 『구당서』 권138, 가담전, “至十七年, 又撰成海內華夷圖及古今郡國縣道四夷述四十卷, 表獻之, 曰, …”(3784~3786쪽); 『신당서』 권166, 가담전, “又圖海內華夷, 廣三丈, 從三丈三尺, 以寸爲百里, 並撰古今郡國縣道四夷述, 其中國本之禹貢, 外夷本班固漢書, 古郡國題以墨, 今州縣以朱, 刊落疏舛, 多所釐正”(5084쪽).

218) 『신당서』 권138, 馬璘傳, “少學術, 而武幹絕倫. …… 在涇八年, 繕屯壁, 爲戰守具, 令肅不殘, 人樂爲用, 虜不敢犯, 爲中興銳將. 初, 涇軍乏財, 帝諷李抱玉讓鄭·穎, 璘因得衰積, 且前後賜資無算, 家富不貲. 治第京師, 侈甚, 其寢堂無慮費錢二十萬緡. 方璘在軍, 守者覆以油幔. 及喪歸, 都人爭入觀, 假稱故吏入赴弔者日數百. 德宗在東宮聞之, 不喜. 及即位, 乃禁第舍不得踰制, 詔毀璘中寢及宦人劉忠翼第. 璘家懼, 悉籍亭館入之官. 其後賜羣臣宴, 多在璘山池. 而子弟無行, 財亦尋盡”(4619쪽); 『구당서』 권152, 마린전, “德宗在東宮, 宿聞其事, 及踐祚, 條舉格令, 第舍不得踰制, 仍詔毀璘中堂及內官劉忠翼之第, 璘之家園, 進屬官司. 自後公卿賜宴, 多於璘之山池”(4067쪽).

다.<sup>219)</sup> 병술일 河中行軍司馬 鄭元을 河中尹·兼御史大夫·河中絳節度使로 삼았다.<sup>220)</sup>

5월 계해일 竇羣을 左拾遺에 임명하였다. 경진일 祠部員外郎 裴泰를 檢校兵部郎中·充安南都護·本管經略使로 삼았다.<sup>221)</sup>

6월 계사일 이부상서 고소연을 兵部尚書·東都留守·東都畿汝防禦使<sup>222)</sup>로 삼았다. 前東都留守·檢校禮部尚書 王翽이 졸하였다.

8월 임인일 邕管經略使 徐申을 廣州刺史·嶺南節度使로 삼았다. 갑진일 嶺南節度掌書記·試大理評事 張正元을 邕州刺史·御史中丞·邕管經略使로 삼았는데, 급사중 허명용이 순서를 넘은 승진[遷授]이라 하여 詔書를 封還하였다. 정미일 戶部侍郎·判度支 王紹를 호부상서·판탁지에 임명하였다.

9월 을묘일 초하루에 太常少卿 楊憑을 潭州刺史·湖南觀察使로 삼았다. 군신들에게 馬璘 山池에서 연회를 베풀고 황제가 ‘九日賜宴詩’ 6운을 지어 하사하였다.

겨울 10월 정해일 형부상서 王鏐을 淮南節度副使·兼行軍司馬로 삼았다.<sup>223)</sup> 기유일 鄜坊丹延節度使·檢校禮部尚書 王棲耀가 졸하였다.

11월 병진일 同州刺史 劉公濟를 鄜州刺史·부방단연절도사로 삼았다.

12월 을사일 大理卿 李正臣을 衛尉少卿으로 좌천시켰는데, 이정신은

219) 『자치통감』 권236, 정원 18년 3월 조, “給事中長安許孟容封還詔書, [호삼성 주: 封還詔書, 不肯書讀, 所謂糾駁也, 亦謂之塗歸, 唐人語也] 曰, ‘衢州無他虞, 齊總無殊績, 忽此超獎, 深駭羣情. 若總必有可錄, 願明書勞課, 然後超資改官, 以解衆疑, 詔遂留中. 己亥, 上召孟容, 慰獎之’”(7599쪽).

220) 吳廷燮, 『唐方鎮年表』 1, 何中, 정원 18년 조, 449쪽.

221) 『安南志略』 권9, 唐安南都督[都]護經略使交愛驩三郡刺史, 趙昌 조, “拜昌爲都護, …… 以兵部郎中裴泰代之, 未幾, 州將王季元逐泰, 德宗召昌問狀, …… 復拜安南都護”(中華書局, 1995, 217~218쪽).

222) 吳廷燮, 『唐方鎮年表』 3, 東畿, 1161~1167쪽 참조.

223) 『자치통감』 권236, 정원 18년 10월 조, 7600쪽.

御史에게 彈劾받아 하옥되자 그 치욕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 무신일 黎州蠻과 牂柯의 사신이 입조하였다.

[정원] 19년(803) 봄 정월 계축일이 초하루이다.

2월 임오일 초하루 馬璘 山池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정해일 [大明宮의 正殿] 含元殿을 수선하였다. 安黃節度에게 奉義軍[이라는 군호]를 하사하였다.<sup>224)</sup> 병신일 桂管留後 韋武를 桂州刺史·桂管觀察使로 삼았다. 기해일 安南經略使 裴泰가 州將 王季元에게 쫓겨났다.<sup>225)</sup> 갑진일 淮南節度使 杜祐가 내조하였다.

3월 임자일 초하루 두우를 檢校司空·同中書門下平章事·太清宮使로 삼았다. 淮南行軍司馬 王鏐를 檢校尚書右僕射·兼揚州大都督府長史·淮南節度使로 삼았다. 정묘일 금년 4월의 종묘 제사[禘饗]에 즈음하여 이전에 논의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했던 太祖·懿·獻의 신위가 이번 禘祭에 이르러 바야흐로 太祖 東向의 신위가 맞는 것으로 하고 이하 순서에 따라 昭·穆으로 배열하게 하였다. 그 獻祖·懿祖는 德明·興聖의 廟에 합사[附]하고 매번의 종묘대제[禘祫] 해에 本室에서 제사지내게[饗]하였다. 을해일 司農卿 李實을 경조윤로 삼았다.<sup>226)</sup>

여름 4월 을미일 涇原節度使 劉昌이 行原州를 平涼城으로 옮길 것을 奏請하니 이에 따랐다.<sup>227)</sup> 무술일 종묘 합사가 마침에 따라 百官들이 발

224) 『구당서』 권151, 伊慎傳, “二十一年, 於安黃置奉義軍額, 以爲奉義軍節度使·檢校右僕射”(4056쪽). 吳廷燮, 『唐方鎮年表』 3, 安州, 정원 19년 조, 1267쪽 참조.

225) 앞의 전 해 5월 조 및 각주 참조.

226) 건중 2년(781)부터 이때까지 20여 년 동안 진행된 종묘 ‘시조’ 예의 논쟁은 秦漢 이래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여러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결국 개국 황제 혹은 개국 황제의 近世 조상을 종묘 시조로 하였다. 郭善兵, 『中國古代帝王宗廟禮制研究』, 人民出版社, 2007, 428쪽 등 참조.

227) 『자치통감』 권236, 정원 19년 4월 조, “涇原節度使劉昌奏請徙原州治平涼, 從之.

로 뛰고 손으로 춤추며[蹈舞]<sup>228)</sup> 축하였다.

5월 신해일 荊南節度使·檢校工部尚書·江陵尹 裴胄가 졸하였다. 을미일 荊南行軍司馬 裴筠을 강릉윤·兼어사대부·형남절도사로 삼았다. 갑자일 四鎮北庭行軍涇原節度使·檢校右僕射·涇州刺史 劉昌이 졸하였다. 갑술일 涇原節度留後 段祐를 경주자사·겸어사대부·사진북정행군 경원절도사로 삼았다.<sup>229)</sup> 을해일 吐蕃이 사신 論頻熱을 보내 입조하였다. 갑진일 陳許行軍司馬 劉昌裔를 檢校工部尚書·兼許州刺史·陳許節度使로 삼았다. 정월부터 이때까지 비가 오지 않아 사람을 나누어 보내 산천에 기도하게 하였다.

가을 7월 무오일 關輔에 기근이 들어 吏部選·禮部貢舉를 취소하였다. 기미일 中書侍郎·平章事 齊抗이 太子賓客에 임명되었는데, 병으로 [재상을] 파직[免]한 것이다.<sup>230)</sup> 갑술일 비가 내렸다. 을해일 尚書右僕射 姚南仲이 흥거하였다. 京畿 백성[民]에게 보리 종자를 빌려주었다.

8월 을미일 큰 장마가 내렸다.

겨울 10월 을미일 太子賓客 韋夏卿을 東都留守·東都畿汝都防禦使로 삼았다.

윤10월 정사일 門下侍郎·同平章事 崔損이 졸하였다.

11월 무인일 초하루 鹽州兵馬使 李興幹을 鹽州刺史로 삼아 황제에게 직보[專達]하는 것을 허락하고 夏州에 예속시키지 않았다. 병오일 振·武·麟·勝節度使 範希朝가 내조하였다 무오일 振武行軍司馬 閻巨源을 檢校工部尚書·兼單于大都護·振武麟勝節度使로 삼았다. 경신일 太常

[호삼성 주: 七年劉昌築平涼, 事見二百三十三. 原州本治高平, 唐爲平高縣, 爲吐蕃所陷](7601쪽).

228) 跳舞 혹은 舞蹈의 의미 등에 관해서는 와타나베 신이치로, 『찬공의 옥좌』, 136~141쪽 참조.

229) 吳廷燮, 『唐方鎮年表』 1, 涇原, 정원 19년 조, 61쪽.

230) 아래의 다음해(정원 20년) 4월 조에 “太子賓客齊抗卒”이라 한다.

卿 高郢을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로 삼았다. 임신일 監察御史 崔蘧이 어사대에 들어간 시간이 짧아 故事를 숙지하지 못해 규정[式]을 위반하여 右神策軍에 들어갔다. 황제가 노하여 40대를 때리고[答] 崖州로 配流하였다.

[정월] 20년(804) 봄 정월 정축일이 초하루이다. 병신일 天德軍防禦團練使·豐州刺史 李景略이 졸하자 그 判官 任迪簡에게 그 직임을 대신 맡게 하였다. 기해일 鄜·坊·丹·延節度使 劉公濟를 공부상서에 임명하고 그 行軍司馬 裴玢에게 그 직임을 대신 맡게 하였다.

2월 병오일 초하루 中和節의 연회를 취소하였는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경술일 크게 천둥이 진동하였고 우박이 내렸다[雨雹].

3월 갑신일 吐蕃 贊普가 졸하였으므로 조회를 열지 않았다. 기해일 國子祭酒 趙昌을 安南都護·御史大夫·本管經略使로 삼았다.<sup>231)</sup>

여름 4월 신유일 太子賓客 齊抗이 졸하였다. 병인일 토번이 臧河南觀察使 論乞冉 등 54인을 보내 와 조공하였다. 陳許節度에게 忠武軍이라는 명호를 하사하였다.<sup>232)</sup>

5월 갑술일 초하루 宣政殿으로 나가지 않았다. 을해일 史館修撰·秘書監 張薦을 工部侍郎·兼御史大夫·充入吐蕃吊祭使로 삼았다.

7월 계유일 초하루 큰 우박이 내렸다. 신묘일 福建觀察使 柳冕이 泉州 경내[界]에 萬安監牧을 설치하길 상주하여 羣牧 5곳을 두고 部內的 馬·牛·羊을 모두 근 1만 필을 수색해 내어 監吏가 주관하게 하였다.

8월 무신일 房州刺史 郟(극)士美를 黔中觀察使로 삼았다.<sup>233)</sup> 기미일

231) 앞의 정월 18년 5월 조의 각주 참조.

232) 『자치통감』 권236, 정월 20년 4월 조, “名陳許軍曰忠武”(760쪽).

233) 『구당서』 권157, 郟士美傳, “由坊州刺史爲黔州刺史·兼御史大夫·持節黔中經略召討觀察鹽鐵等使. 時溪州賊帥向子琪連結夷獠, 控據山洞, 衆號七八千, 士美

昭義兵馬使 盧從史를 檢校工部尚書·兼潞州長史·昭義軍節度·澤潞磁邢洺觀察使로 삼았다.<sup>234)</sup>

9월 경진일 군신들에게 馬璘 山池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겨울 10월 갑진일 景州 南皮縣에 唐昌軍<sup>235)</sup>을 설치하였다. 신해일 易定節度使 張茂昭가 내조하였다.

11월 정유일 감찰어사 李程, 秘書正字 張聿(聿), 藍田縣尉 王涯를 모두 翰林學士에 임명하였다.

12월 吐蕃·南詔·日本國이 모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경오일 桂管防禦使 顏証을 桂州刺史·桂管觀察使로 삼았다.

[정원] 21년(805) 봄 정월 신미일 초하루 睿元殿으로 나가 朝賀를 받았다. 이 날 황제의 몸이 좋지 않았다. 병자일 浙東觀察判官 凌准을 翰林學士에 임명하였다. 계사일 군신들을 宣政殿에 모아놓고 遺詔를 선포하여 太子가 마땅히 관 앞에서 즉위하게 하였다. 이 날 황제가 會寧殿에서 붕어하니 향년 64세였다. 갑오일 영구를 [궁성] 太極殿<sup>236)</sup>으로 옮겼다. 병신일 發喪하니 군신들이 흰 소복을 입었다[縞素]. 황태자가 즉위하였다. 永貞 원년(805) 9월 정묘일 군신들이 神武孝文이라는 시호를 올리고 廟號를 德宗이라 하였다. 10월 기유일 崇陵에 장사지내고 昭德皇后 王氏<sup>237)</sup>를 합장[附]하였다.

設奇略討平之”(4146쪽).

234) 『자치통감』 권236, 정원 20년 7월 및 8월 조, 7605~7606쪽.

235) 『신당서』 권39, 지리지3, 河北道, 景州 臨津縣 조, “有唐昌軍, 貞元二十一年置”(1018쪽).

236) 『자치통감』 권197, 태종 정관 17년 4월 조의 호삼성 주, “按唐六典, 兩儀殿在太極殿之後, 蓋古之內朝也, 常日視朝而聽事焉”, “西內正門曰承天門, 正殿曰太極, 太極之後曰兩儀殿. 六典, 朔望御太極殿視朝, 蓋古之中朝也”(6196쪽).

237)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정원 2년(786) 11월 조, “甲午, 冊淑妃王氏爲皇后.

史臣이 말한다. 덕종황제는 처음에 萬機를 총람하며 治道에 매진하였다. 다스림을 생각하는 것이 마치 목말라하는 것과 같고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불쌍히 여기는 듯하였다. 똑바로 앉자 바른말을 받아들이고 자리를 비스듬히 하여 인재를 구하려 하였다. 그 초기에 있어서는 명분 없는 비용을 줄이고 급하지 않는 직관을 없앴으며 후궁[永巷]의 궁녀[嬪嬙]를 내보내고 文單[國]의 길들여진 코끼리를 방출하였으며, [음식 담당] 太官<sup>238)</sup>의 음식을 줄이고 의복·노리개[服玩]의 사치를 경계하였으며, 鷹犬을 풀어주고 악공[伶倫]을 방출하였으며, 술 전매[榷酤]를 그만두고 貢奉을 끊었다.<sup>239)</sup> 百神이 모두 자리를 잡고 오륜[五典]에 능히 따랐으며, 正殿으로 나가 賢良을 시험하고 廷臣을 거두어 畿甸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것은 모두 前王의 能事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큰 지혜로 이에 따라 행하니 누가 감히 논하겠는가. 이에 더해 하늘이 내린 재능이 빼어나고 무성하며 文思가 화려하다. 金鑾[殿]에 붓을 놀리니 淮南의 작품에 부끄럽지 않고 종이 위에 글을 지어니 隴坻 사람인 [揚雄]의 저술에 부끄럽지 않다. 文雅가 다시 일어나 前代를 훨씬 초월하고 [시경의] ‘二南’과 [曹魏의] 三祖가 어찌 이보다 낮겠는가. 그러나 王·霸의 흔적이 다르고 순막함과 부하[醜]가 대대로 바뀌어 시세를 살피[揆時] 다스리고 짐작하여 흡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쇠란[交喪]의 시기에 가벼이 鄙夫의 논함을 취하면 近世를 두루 살펴보건대 패망하지 않음이 없다. 德宗

…… 丁酉, 冊皇后王氏, 是日后崩, 諡曰昭德”(355쪽); 『구당서』 권52, 后妃下, 德宗昭德皇后王氏傳, 2193쪽; 『신당서』 권77, 后妃下, 德宗昭德皇后王氏傳, 3502쪽.

238) 김택민 주편, 『역주 당육전』 상, 신서원, 2003, 55쪽, 127쪽, 457~458쪽; 同, 『역주 당육전』 중, 신서원, 2005, 192쪽, 356쪽, 366쪽, 422쪽, 429~430쪽, 431쪽, 433~443쪽, 444쪽, 446쪽, 609쪽 등.

239) 근검과 절제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즉위 초기에 행해졌다. 정병준, 「德宗의 藩鎮改革 政策과 平盧節度使 李正己」, 『중국사연구』 81, 2012, 136~137쪽 참조.

은 친왕으로 있을 때 일찍이 統帥가 되었고<sup>240)</sup> 즉위한 후 자못 經綸을 자부하였다. 그리하여 초기부터 곽자의[郭射]의 병권을 파면하고 파격적으로 楊炎의 謬計을 청취하여 마침내 천하[華裔]를 통일하여 奸豪를 속박하기 위해 남쪽으로 襄漢의 주살에 나서고 북쪽으로 恆陽의 토벌에 임하였다. 출병이 분분하며 요란스럽고[雲擾] 장수에게 명하는 것이 빈번함에 따라 國用을 소진하여 군대를 먹이기에 부족하고 民力을 다하였으나 賊을 격파하지 못하였다. 하루아침에 德音이 땅을 쓸어버리니[掃地] 시름과 탄식이 계속 이어졌다[連薨]. 과연 五盜가 天王을 참칭하기에 이르고 2朱가 宗社를 능멸하고[憑陵]<sup>241)</sup> 奉天의 곤궁함은 가히 눈물이 흐를진대 자기를 벌하는[罪已] 말이 무슨 도움이 되리오. 다행히 충신의 협력[戮力]에 힘입어 불운이 창성함으로 바뀌었다[再昌]. 비록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끝내 楊炎을 축출하고 간신의 말을 듣고서도 盧杞를 잊지 못하였다. [張]延賞의 사적 원한을 들어주어[用] 李晟의 병권[兵符]을 빼앗고 [裴]延齡의 간교한 모략을 취하여 陸贄의 재상 자리를 파직시켰다. 사람을 아는 것이 지혜로움[哲]인데, 이와 같은 것인가! 貞元 시기는 우리의 道가 窮하였다.

贊하여 말한다. 聰明하고 文思가 있어도 예지가 있어야만 성인이 된다. 간사한 자를 보호하고 선량을 자를 손상해서는 정치와 판단이 바로 되지 않는다. 나라를 27년 동안(779~805) 다스린 것은 때마침 천운을 만난 때문이다.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 때 헛되이 시 읊는 것[篇咏]을 자랑하였구나.

240) 정병준, 『新唐書』 권7, 德宗本紀 역주, 433쪽 참조.

241) 정병준, 『唐 德宗代 四王二帝의 亂과 그 限界』, 『동양사학연구』 137, 2016 참조.

